

---

#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토론회

---

- 일 시: 2021. 06. 11(금) 10:30 - 12:30
- 장 소: 한국여성의전화
- 주 최: 한국여성의전화,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 순 서

사회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 = 발제

#### ○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연구

신상희 |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오래뜰 정책팀장

---

### = 토론

#### ○ 시작부터 힘겨운 이혼

이루리 |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 ○ 국가 조력의 향방: 가정폭력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 가사조정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여혜숙 |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 ○ 이혼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과 방향

김재희 | 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 이혼소송과정에서 인권침해

허순임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대표

---

## 목 차

○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연구	신상희	05
○ 시작부터 힘겨운 이혼	이루리	65
○ 국가 조력의 향방: 가정폭력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허민숙	74
○ 가사조정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여혜숙	80
○ 이혼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과 방향	김재희	84
○ 이혼소송과정에서 인권침해	허순임	89

#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연구

---

신상희 |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오래뜰 정책팀장

#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연구

신상희<sup>1)</sup>

## 1.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정책 방향은 부부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이혼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혼 숙려제도, 부부 상담, 부모교육 등 각종 제도를 통해 되도록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혼 절차는 하루빨리 가해자와 분리해야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가사조사나 이혼 재판에서 부부 상담을 권고받거나 가해자와 자녀를 만나게 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이혼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만나는 가사조사관, 조정위원, 상담위원, 판사, 변호사들에게 “왜 20년 동안 폭력을 당했나?”, “저런 남편과 왜 결혼을 했나?” 등의 질문을 받고,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데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등에 말을 듣는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대면은 정신적 고통은 주는 일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피해자와 대면조사를 강요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 자녀의 안전과 복리보다 가해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 자녀면접교섭을 통해 피해 자녀를 이혼 소송 중에서 만나게 하기도 한다. 이렇듯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로 보호받기보다 이혼소송 당사자로만 인지하여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다. 이 같은 인권침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수년간 토론회, 정책제안서,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문제 제기해왔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나 사법부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현재 보수적인 한국의 이혼 정책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첫째, 가사조사, 부부 상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에 대한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를 통해 사례를 취합하였고, 둘째 <이혼에 대한 일반적 인식조사> 및 <이혼 소송 경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FGI를 진행하여 직접적인 사례와 정책 제안을 들었다. 본 발제문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취합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오래뜰 정책팀장

## 2.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연구 방법

### 1) 설문조사

#### (1) 설문조사 목적

본회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알아보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혼에 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이하 일반인식 조사)와 이혼 소송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 경험에 관한 조사>(이혼 소송 경험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첫째, 이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이혼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인식이 이혼을 준비하고 소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둘째, 이혼 소송 경험자들을 통해 이혼 소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 (2) 설문조사 내용

<이혼에 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의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혼 의사
- ② 이혼 사유
- ③ 이혼 시 고려사항
- ④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
- ⑤ 이혼 제도의 필요성(의무면담제도, 부부상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이혼 숙려제도 등)

<이혼 소송 경험에 관한 조사>의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혼 소송에서 어려움
- ② 가사조사, 부부상담, 사전면접교섭, 무료법률구조변호사에 대한 어려움
- ③ 이혼 소송 완료 후 어려움
- ④ 이혼 소송에 필요한 정책

#### (3) 설문조사 방법 및 진행

본회는 설문지 구성을 위해 3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본회 전문위원 중 변호사 3명과 당사자 4명에게 자문을 받았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서베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SNS, 뉴스레터, 회원문자와 이혼 소송 경험이 있는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센터 내담자,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본회 베틀여성모임<sup>2)</sup>, 온라인 이혼 관련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배포하였다.

설문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는 지난 3월 31일~4월 16일에 진행하였고, 2차는 가정폭력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5월 6일~5월 16일에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일반인식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이혼 소송 경험 조사>는 만 19세 이상 이혼 소송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식 조사>는

---

2) 베틀여성모임은 본회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센터 '오래뜰'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자조 모임이다.

총 987명이 참여하였고, <이혼 소송 경험 조사>는 총 297명이 참여하였다.

## 2) FGI 진행 및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혼 소송 경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FGI를 진행하였다. FGI는 지난 4월 8일 본회 ‘깊은’ 교육장에서 진행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4명이 참여하였다. FGI를 통해 <이혼 소송 경험 조사>에서 다룬 가사조사, 부부 상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무료법률구조에서 어려움을 듣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 3)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취합

본회는 2020년 지부 쉼터를 중심으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사조사관에 의한 2차 피해가 5건, 자녀면접교섭권 사례가 4건, 부부 상담명령 사례가 4건, 조정위원에 의한 2차 피해가 1건으로 총 14건의 사례를 취합하였다. 그리고 올해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를 통해 3월 2일 ~ 3월 12일에 쉼터 내담자들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사례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주요 내용은 가사조사, 자녀면접교섭, 부부 상담 등 이혼 소송 과정에서 판사, 가사조사관, 조정위원, 상담위원, 피해자 담당 변호사 등으로부터 겪는 인권침해였다.

## 3. 사례연구 참여자들 특성

### 1) <이혼에 관한 일반적 인식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1)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일반인식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였다.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 수는 총 1,004명이었고 이중 성인은 987명이었다. 따라서 본 설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987명에 대한 것이다.

〈표1〉 참여자 성별 및 연령

	문항	명수	비율
성별	여자	928	94.0%
	남자	47	4.8%
	기타	12	1.2%
연령	20대	301	30.5%
	30대	286	29.0%
	40대	239	24.2%
	50대	136	13.8%
	60대	22	2.25%
	무응답	3	0.3%

<일반인식 조사>의 참여자 중 여성은 전체 인원 중 928명이고, 전체 중 97%였다. 그리

고 남성은 47명으로 4.8%, 기타가 12명으로 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301명으로 30.5%가 참여하였고,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30대가 286명으로 29%, 40대가 239명으로 24.2%, 50대가 136명으로 13.8%, 60대가 22명으로 2.25%, 무응답이 3명으로 0.3%였다.

참여자 중 혼인경험이 없는 사람이 451명으로 45.7%였고, 기혼이 265명으로 26.8%, 이혼이 271명으로 27.5%였다. 전체 혼인경험 유무로 나눠보면 혼인경험이 없는 사람은 451명이고, 혼인경험이 있는 사람은 536명이다. 혼인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이 가장 많았다. 혼인 지속기간별로 보면 20년 이상은 147명으로 27.4%였고, 2년 이상 ~5년 이하가 18.8%, 5년 이상 ~ 10년 이하가 16.6%, 10년~15년 이하가 15.9% 순이었다. 혼인기간이 1년 이하는 전체 4.7%로 가장 낮았다. 자녀는 2명이 45.3%로 가장 많았고, 1명이 32.5%, 자녀가 없는 사람은 12.1%, 3명 이상은 10.1%였다.

〈표 2〉 혼인 경험 및 자녀 수

	문항	명수	비율
혼인상태	혼인한 적 없음	451	45.7%
	기혼	265	26.8%
	이혼	271	27.5%
혼인기간	1년 이하	25	4.7%
	1년 이상 ~ 2년 이하	44	8.2%
	2년 이상 ~ 5년 이하	101	18.8%
	5년 이상 ~ 10년 이하	89	16.6%
	10년 이상 ~ 15년 이하	85	15.9%
	15년 이상 ~ 20년 이하	45	8.4%
	20년 이상	147	27.4%
자녀수	없음	65	12.1%
	1명	174	32.5%
	2명	243	45.3%
	3명 이상	54	10.1%

참여자들의 교육 정도는 대졸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인원 중 573명으로 58.1%였고, 고졸이 23.1%, 대학원 졸이 17.4% 순으로 대체로 고학력이었다. 직업은 사무직 종사자가 23.5%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종사자가 20.7%, 학생이 14.6%, 전업주부가 10.2%, 서비스직 종사자가 10.2% 순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250만 원 이하가 35.6%로 가장 많았고, 150만 원 이하가 24.8%, 소득 없음이 14.9% 순이었다. 응답자의 75.3%가 월평균 소득 250만 원 이하였고, 300만 원 이하는 12.7%, 400만 원 이하~500만 원 이상이 12%였다.

〈표 3〉 교육정도 및 경제적 상황

	문항	명수	비율
교육정도	초졸	3	0.3%
	중졸	9	0.9%
	고졸	228	23.1%
	대졸	573	58.1%
	대학원졸	172	17.4%
	기타	2	0.2%
직업	공무원	37	3.7%
	농수축산업 종사자	4	0.4%
	사무직 종사자	232	23.5%
	서비스직 종사자	101	10.2%
	단순노무 종사자	10	1.0%
	자영업자	38	3.9%
	전문직 종사자	204	20.7%
	전업주부 (무급가사노동자)	101	10.2%
	학생	144	14.6%
	기타	70	7.1%
	무직	43	4.4%
	무응답	3	0.3%
	월평균 소득	소득 없음	147
150만 원 이하		245	24.8%
250만 원 이하		351	35.6%
300만 원 이하		125	12.7%
400만 원 이하		63	6.4%
500만 원 이하		23	2.3%
500만 원 이상		33	3.3%

참여자들의 종교는 61.7%가 무교였고, 20.7%가 기독교, 9.2%가 천주교, 8.0%가 불교, 기타가 0.2%, 무응답이 0.2%였다.

〈표 4〉 종교

문항	명수	비율
무교	609	61.7%
기독교	204	20.7%
천주교	91	9.2%
불교	79	8.0%
기타	2	0.2%
무응답	2	0.2%

<일반인식 조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여성이 97%로 대부분 여성이 많이 참여하였고, 연령대로 보면 20~40대가 83.7%를 차지하였다. 혼인경험이 없는 사람은 45.7%였고, 54.3%가 혼인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혼인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금 많았다. 그리고 자녀수는 1명이 32.5%, 2명이 45.3%로 전체 77.8%가 1~2명이었다. 참여자들의 교육 정도

는 75.5%가 대졸 이상이고, 직업은 사무직, 전문직,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참여자들의 75.3%가 월평균 소득 250만 원 이하였다. 종교는 61.7%가 무교였고, 기독교가 약 20% 정도였다.

**(2) <일반인식 조사> 참여자들의 성역할 태도**

참여자들의 성역할 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성역할 태도 7가지 문항<sup>3)</sup>을 주고 참여자들 본인이 생각하는 성역할 태도와 우리 사회의 성역할 태도는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응답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각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성평등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성역할 태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성역할 태도에 대해 불평등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사고 또는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4)</sup>

전체 참여자들의 응답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동의하는 비율은 낮았다. 문항별로 보면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문항에서 동의하지 않는 응답 비율이 97.2%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라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 비율이 87.6%로 가장 낮았다. 설문결과를 보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되는 성역할 태도는 비교적 성평등한 태도를 가졌으나 사회의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문항보다 성평등한 태도 비율이 낮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2019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중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라는 성역할 태도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50.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sup>5)</sup> 본회 설문조사 참여자들과 비교했을 때 약 32%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본회 설문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다른 일반조사 참여자보다 비교적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성역할 태도에 대한 나의 인식**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64.6%	18.5%	14.4%	2.4%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80.6%	14.6%	3.1%	1.6%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73.3%	18.5%	7.3%	0.9%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80.0%	15.8%	3.2%	0.9%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가야 한다.	85.0%	12.8%	1.5%	0.7%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85.3%	11.9%	2.0%	0.8%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업 등)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82.7%	14.5%	1.7%	1.1%

3) 김정혜, 「2019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p247

4) 김정혜, 「2019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p72

5) 김정혜, 「2019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p72

연령별로 성역할 태도를 보면 대체로 20대가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성역할 태도에 대해 평등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항별로 보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남자의 역할이다.’는 것과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에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다른 문항보다 낮아 전체 참여자들과 비슷했다.

〈표 6〉 성역할 태도에 대한 나의 인식\_연령별

문항	연령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20대	76.4%	14.0%	7.6%	2.0%
	30대	64.0%	18.5%	16.4%	1.0%
	40대	58.6%	20.5%	17.2%	3.8%
	50대	54.4%	23.5%	17.6%	4.4%
	60대	45.5%	27.3%	27.3%	0.0%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20대	90.7%	8.3%	0.7%	0.3%
	30대	79.0%	15.4%	3.5%	2.1%
	40대	74.5%	18.8%	4.2%	2.5%
	50대	74.3%	19.1%	4.4%	2.2%
	60대	77.3%	18.2%	4.5%	0.0%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20대	84.4%	11.3%	4.3%	0.0%
	30대	70.6%	20.3%	7.7%	1.4%
	40대	66.5%	22.6%	9.6%	1.3%
	50대	67.6%	24.3%	6.6%	1.5%
	60대	63.6%	18.2%	18.2%	0.0%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20대	93.0%	6.6%	0.3%	0.0%
	30대	79.4%	15.4%	4.2%	1.0%
	40대	70.7%	24.3%	3.8%	1.3%
	50대	72.8%	19.9%	5.1%	2.2%
	60대	63.6%	27.3%	9.1%	0.0%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가야 한다	20대	93.0%	6.6%	0.0%	0.3%
	30대	83.9%	12.2%	2.8%	1.0%
	40대	80.8%	16.7%	1.7%	0.8%
	50대	80.1%	18.4%	0.7%	0.7%
	60대	72.7%	27.3%	0.0%	0.0%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20대	95.0%	5.0%	0.0%	0.0%
	30대	82.2%	13.3%	4.2%	0.3%
	40대	81.6%	14.6%	2.1%	1.7%
	50대	78.7%	17.6%	1.5%	2.2%
	60대	81.8%	18.2%	0.0%	0.0%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업 등)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 되어야 한다	20대	91.4%	7.6%	0.3%	0.7%
	30대	81.1%	14.3%	3.5%	1.0%
	40대	77.8%	19.2%	1.3%	1.7%
	50대	79.4%	17.6%	1.5%	1.5%
	60대	63.6%	36.4%	0.0%	0.0%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본인보다 우리 사회가 성역할 태도에서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래 <표7>은 전체 참여자들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다. 문항별로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라는 문항에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외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역할 요구 문항이 대체로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우리 사회는 가정에서 성역할 태도는 비교적 성평등한 의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표 7> 성역할 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_전체 응답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9.6%	9.6%	50.5%	30.3%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12.9%	10.0%	45.0%	32.1%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12.1%	12.7%	47.0%	28.3%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11.9%	10.6%	43.5%	34.0%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가야 한다.	15.9%	25.5%	44.3%	14.3%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15.9%	30.5%	42.7%	10.9%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업) 등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18.9%	41.3%	31.6%	8.1%

성역할 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20대는 우리 사회의 성역할 태도에 대해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의 비율이 낮아졌다. 동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0대는 우리 사회가 성역할 태도에서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다. 가정에서 요구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역할 태도에서 동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도 전체 응답자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8〉 성역할 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_연령별

문항	연령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20대	0.7%	5.3%	54.8%	39.2%
	30대	10.1%	8.7%	49.7%	31.5%
	40대	16.3%	11.3%	49.4%	23.0%
	50대	14.7%	16.9%	43.4%	25.0%
	60대	22.7%	13.6%	54.5%	9.1%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20대	2.7%	6.3%	47.2%	43.9%
	30대	12.2%	8.0%	43.4%	36.4%
	40대	20.1%	13.4%	46.0%	20.5%
	50대	19.9%	16.2%	41.2%	22.8%
	60대	36.4%	9.1%	50.0%	4.5%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20대	2.0%	9.3%	50.5%	38.2%
	30대	11.5%	11.9%	44.4%	32.2%
	40대	19.2%	15.9%	46.4%	18.4%
	50대	20.6%	16.2%	44.1%	19.1%
	60대	22.7%	9.1%	59.1%	9.1%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20대	2.0%	5.3%	46.2%	46.5%
	30대	11.9%	8.7%	42.3%	37.1%
	40대	18.8%	18.0%	41.0%	22.2%
	50대	20.6%	9.6%	44.9%	25.0%
	60대	18.2%	27.3%	40.9%	13.6%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가야 한다	20대	6.6%	27.6%	50.5%	15.3%
	30대	14.7%	22.7%	43.7%	18.9%
	40대	24.3%	27.6%	38.5%	9.6%
	50대	22.1%	22.1%	42.6%	13.2%
	60대	27.3%	31.8%	40.9%	0.0%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20대	7.3%	31.2%	50.2%	11.3%
	30대	14.7%	28.3%	43.7%	13.3%
	40대	23.8%	29.3%	37.2%	9.6%
	50대	22.1%	32.4%	36.8%	8.8%
	60대	22.7%	50.0%	22.7%	4.5%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업 등)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 되어야 한다	20대	10.0%	46.2%	33.9%	10.0%
	30대	18.9%	43.0%	30.1%	8.0%
	40대	28.0%	36.4%	28.5%	7.1%
	50대	21.3%	35.3%	36.0%	7.4%
	60대	27.3%	45.5%	27.3%	0.0%

## 2) <이혼 소송 경험에 관한 조사> 응답자 특성

### (1)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이혼 소송 경험 조사>는 이혼 소송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였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총 296명이고, 그중 173명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소속 쉼터 내담자들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다.

참여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283명이고, 남성이 13명이다. 연령은 40대가 119명으로 39.2%였고, 30대가 118명으로 38.9%로 30대와 40대가 전체 78.1%였다. 그리고 50대는 45명, 60대 13명, 20대는 7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9〉 성별 및 연령

	문항	명수	비율
성별	여자	283	95.6%
	남자	13	4.4%
연령	20대	7	2.4%
	30대	115	38.9%
	40대	116	39.2%
	50대	45	15.2%
	60대	13	4.4%

<이혼 소송 경험 조사>의 참여자 혼인 기간은 2년~5년 이하가 24%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 이하가 23.3%, 10년~15년 이하가 14.9%, 1년~2년 이하와 20년 이상이 각각 13.5% 순이었다. 자녀는 1명이 44.3%로 가장 많았고, 2명이 33.1%였다. <일반 인식 조사>의 참여자 혼인 기간은 20년 이상이 27.4%로 가장 많았고, 자녀 수는 2명이 45.3%로 가장 많았는데 <이혼 소송 경험 조사>의 참여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10〉 혼인 기간 및 자녀 수

	문항	명수	비율
혼인기간	1년 이하	16	5.4%
	1년 이상 ~ 2년 이하	40	13.5%
	2년 이상 ~ 5년 이하	71	24.0%
	5년 이상 ~ 10년 이하	69	23.3%
	10년 이상 ~ 15년 이하	44	14.9%
	15년 이상 ~ 20년 이하	16	5.4%
	20년 이상	40	13.5%
자녀수	없음	37	12.5%
	1명	131	44.3%
	2명	98	33.1%
	3명	25	8.4%
	3명 이상	4	1.4%
	기타	1	0.3%

<표 11>은 <이혼 소송 경험 조사> 참여자들의 교육 정도, 직업, 월평균 소득에 대한 표이다. 교육 정도를 보면 대졸이 63.9%, 고졸이 24.7%로 전체 88.6%를 차지했다. 그리고 중졸이 5.1%, 대학원 졸이 4.4%, 초졸 1.4% 순이었다. 직업은 사무직 종사자가 28.4%, 서비스직 종사자가 20.3%, 전문직 종사자가 16.9%, 전업주부가 15.9% 순이었다. <일반인식 조사>에서는 서비스직 종사자가 10.2%였는데 <이혼 소송 경험 조사>에서는 서비스직 종사자가 20.3%로 두 번째로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이하가 33.4%로 가장 많았고, 소득 없음이 26.4%로 그다음 순위였다. 그리고 250만 원 이하가 15.5%, 500만 원 이상이

12.2%, 300만 원 이하가 9.1% 순이었다.

〈표 11〉 교육 정도 및 경제적 상황

	문항	명수	비율
교육정도	초졸	4	1.4%
	중졸	15	5.1%
	고졸	73	24.7%
	대졸	189	63.9%
	대학원졸	13	4.4%
	기타	2	0.7%
직업	공무원	7	2.4%
	농수축산업 종사자	1	0.3%
	사무직 종사자	84	28.4%
	서비스직 종사자	60	20.3%
	단순노무 종사자	9	3.0%
	자영업자	17	5.7%
	전문직 종사자	50	16.9%
	전업주부 (무급가사노동자)	47	15.9%
	학생	3	1.0%
	기타	11	3.7%
	무직	7	2.4%
	월평균 소득	소득 없음	78
150만 원 이하		99	33.4%
250만 원 이하		46	15.5%
300만 원 이하		27	9.1%
400만 원 이하		5	1.7%
500만 원 이하		5	1.7%
500만 원 이상		36	12.2%

<이혼 소송 경험 조사>에서 참여자들의 종교는 51.7%가 무교였고, 27.7%가 기독교, 12.2%가 불교, 8.4%가 천주교였다. <일반인식 조사> 참여자들보다 <이혼 소송 경험 조사> 참여자들의 무교 비율이 낮고, 기독교 비율과 불교 비율이 조금 높아져 종교적인 차이가 약간 있었다.

〈표 12〉 종교

문항	명수	비율
무교	153	51.7%
기독교	82	27.7%
천주교	25	8.4%
불교	36	12.2%

<이혼 소송 경험 조사> 참여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전체 95.6%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가 전체 78.1%로 가장 많았다. 그

리고 혼인 기간은 2년 이상~5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아이는 1명이 가장 많았다. 교육 정도는 대졸과 고졸이 전체 88.6%로 고학력이었다. 직업은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전업주부(무급가사노동자) 순이었고,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이하가 33.4%, 소득 없음이 26.4%로 <일반 인식 조사> 참여자보다 월평균 소득이 낮았다. 이는 가정폭력 쉼터 입소자가 절반 이상 참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쉼터는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노출 위험성으로 정규적인 직업을 가지기 힘들고, 아르바이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 (2) 성역할 태도

<이혼 소송 경험 조사> 참여자들의 성역할 태도는 <표 13>과 같다. 성역할 태도 문항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평등한 태도를 지닌 것으로, 동의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해석할 때, <이혼 소송 경험 조사> 참여자들은 「2019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참여자들보다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높아 성평등한 의식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식 조사> 참여자의 성역할 태도 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성역할 태도가 가부장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연령대의 영향일 수 있는데 <일반인식 조사>에서 20대 참여자가 가장 많았고, 성역할 태도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인식을 비율을 보였다. 그런데 <이혼 소송 경험 조사> 참여자의 경우 20대가 7명으로 2.4%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일반인식 조사>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3> 성역할 태도에 대한 나의 인식\_이혼 소송 경험 전체응답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43.6%	33.1%	22.0%	1.4%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57.8%	29.7%	8.4%	4.1%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57.1%	29.1%	12.2%	1.7%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64.2%	24.0%	10.1%	1.7%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가야 한다.	67.9%	24.7%	5.7%	1.7%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67.9%	24.3%	6.8%	1.0%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업 등)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62.2%	28.7%	7.4%	1.7%

연령별로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응답을 보면 20대와 다른 연령대의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는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비율이 20대와 30대가 50% 이상 차이가 났다.

〈표 14〉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_이혼 소송 경험의 연령별

문항	연령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20대	71.4%	28.6%	0.0%	0.0%
	30대	38.3%	32.2%	27.8%	1.7%
	40대	43.1%	35.3%	20.7%	0.9%
	50대	55.6%	26.7%	15.6%	2.2%
	60대	38.5%	46.2%	15.4%	0.0%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20대	100.0%	0.0%	0.0%	0.0%
	30대	47.0%	31.3%	13.9%	7.8%
	40대	57.8%	33.6%	6.9%	1.7%
	50대	77.8%	20.0%	0.0%	2.2%
	60대	61.5%	30.8%	7.7%	0.0%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20대	85.7%	0.0%	14.3%	0.0%
	30대	52.2%	28.7%	16.5%	2.6%
	40대	56.9%	32.8%	8.6%	1.7%
	50대	64.4%	26.7%	8.9%	0.0%
	60대	61.5%	23.1%	15.4%	0.0%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20대	100.0%	0.0%	0.0%	0.0%
	30대	55.7%	27.8%	12.2%	4.3%
	40대	69.8%	22.4%	7.8%	0.0%
	50대	66.7%	24.4%	8.9%	0.0%
	60대	61.5%	15.4%	23.1%	0.0%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가야 한다	20대	100.0%	0.0%	0.0%	0.0%
	30대	59.1%	30.4%	7.0%	3.5%
	40대	71.6%	20.7%	6.9%	0.9%
	50대	75.6%	22.2%	2.2%	0.0%
	60대	69.2%	30.8%	0.0%	0.0%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20대	100.0%	0.0%	0.0%	0.0%
	30대	60.9%	27.8%	8.7%	2.6%
	40대	69.0%	25.0%	6.0%	0.0%
	50대	77.8%	20.0%	2.2%	0.0%
	60대	69.2%	15.4%	15.4%	0.0%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업 등)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 되어야 한다	20대	100.0%	0.0%	0.0%	0.0%
	30대	52.2%	30.4%	13.9%	3.5%
	40대	66.4%	28.4%	4.3%	0.9%
	50대	73.3%	24.4%	2.2%	0.0%
	60대	53.8%	46.2%	0.0%	0.0%

성역할 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혼 소송 경험 조사> 참여자들은 동의 비율이 <일반 인식 조사> 참여자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성역할 태도가 가부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하는 성역할 태도 문항보다 사회적인 성역할 태도 문항의 동의 비율이 높아 가정보다 사회에 대한 성역할 태도에 대해 더 가부장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5〉 성역할 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_이혼 소송 경험 전체 응답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19.6%	11.8%	48.6%	19.9%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20.9%	14.5%	42.9%	21.6%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20.3%	17.6%	43.9%	18.2%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22.6%	12.8%	32.8%	31.8%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가야 한다.	24.3%	21.3%	30.1%	24.3%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24.3%	20.9%	35.1%	19.6%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업 등)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22.6%	27.0%	35.8%	14.5%

<표 16> 성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전체 문항에서 동의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40대와 50대 순으로 동의 비율이 낮아졌다. 이는 <일반인식 조사>의 참여자들과 조금 다른 모습이나 20대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우리 사회가 성역할 태도에서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혼 소송 경험 조사> 참여자들은 성역할 태도에서 <일반인식 조사> 참여자들보다 성평등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 구성 비율이 30대와 40대, 50대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 볼 수 있지만 20대 참여자들이 적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성역할 태도 문항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되는 문항이 사회적인 성역할 태도보다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가정에서 성역할 태도보다 사회에서 성역할 태도가 더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성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_이혼 소송 경험 연령별

문항	연령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20대	28.6%	14.3%	42.9%	14.3%
	30대	11.3%	13.9%	54.8%	20.0%
	40대	21.6%	10.3%	48.3%	19.8%
	50대	31.1%	4.4%	42.2%	22.2%
	60대	30.8%	30.8%	23.1%	15.4%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20대	28.6%	14.3%	28.6%	28.6%
	30대	10.4%	15.7%	49.6%	24.3%
	40대	25.0%	14.7%	37.9%	22.4%
	50대	33.3%	11.1%	42.2%	13.3%
	60대	30.8%	15.4%	38.5%	15.4%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20대	14.3%	14.3%	28.6%	42.9%
	30대	13.9%	18.3%	49.6%	18.3%
	40대	23.3%	18.1%	38.8%	19.8%
	50대	26.7%	15.6%	44.4%	13.3%
	60대	30.8%	15.4%	46.2%	7.7%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20대	42.9%	14.3%	14.3%	28.6%
	30대	13.9%	13.0%	33.9%	39.1%
	40대	25.0%	15.5%	30.2%	29.3%
	50대	31.1%	4.4%	40.0%	24.4%
	60대	38.5%	15.4%	30.8%	15.4%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가야 한다	20대	42.9%	28.6%	14.3%	14.3%
	30대	14.8%	20.9%	39.1%	25.2%
	40대	27.6%	20.7%	23.3%	28.4%
	50대	33.3%	20.0%	26.7%	20.0%
	60대	38.5%	30.8%	30.8%	0.0%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20대	42.9%	28.6%	14.3%	14.3%
	30대	14.8%	24.3%	40.0%	20.9%
	40대	26.7%	18.1%	34.5%	20.7%
	50대	35.6%	13.3%	33.3%	17.8%
	60대	38.5%	38.5%	15.4%	7.7%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업 등)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 되어야 한다	20대	42.9%	42.9%	0.0%	14.3%
	30대	14.8%	31.3%	40.0%	13.9%
	40대	24.1%	23.3%	35.3%	17.2%
	50대	33.3%	20.0%	33.3%	13.3%
	60대	30.8%	38.5%	30.8%	0.0%

### 3) FGI 참여자 특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연구를 위한 FGI를 지난 4월 7일 본회 '깊은' 교육장에서 진행하였다. FGI 참여자 모집은 본회 쉼터 베틀여성모임과 내마음대로 점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고, 총 4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7> FGI 참여자 현황**

사례자 명	연령	혼인 지속 기간	자녀수 및 연령	폭력 시작 시기	이혼 소송 기간	소송 종류	소송 관련 현재 상태
피해자 A	50대	21년	2명(20대)	결혼 초	2년	이혼, 위자료	재판 중
피해자 B	30대	2년	1명(미취학 아동)	임신 이후부터	3년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이혼 소송 완료 후 재소송 중
피해자 C	30대	4년	2명(미취학 아동)	결혼 초	6개월	이혼, 위자료	이혼 소송 완료
피해자 D	50대	20년	2명(20대)	결혼 초	약 2년	이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소송 완료

FGI에 참여한 피해자들 연령대는 30대가 2명, 50대 2명이었고, 최근까지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이 1명,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사람이 3명이었다. 이들 모두 자녀가 있었고, 결혼 초기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 피해자들 모두 신체적 폭력, 의처증을 비롯한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등을 당했고, 모두 쉼터 경험이 있었다.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쉼터에서 이혼 소송을 시작해 쉼터 퇴소 이후 이혼 소송이 끝났거나 아직도 소송 중이다. 쉼터 기간 내 이혼 소송을 완료한 사람은 피해자 C로 그녀는 위자료와 재산상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향후 재산과 관련한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양육권 포기 및 양육비 지연 이행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이혼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었다. 피해자 B와 D는 가해자의 항소로 재판 기간이 2년~3년이 걸렸고, 피해자 B는 재판 이후 가해자가 양육비와 위자료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소송 중이다.

#### 4.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연구 결과 및 분석

##### 1) 이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한국에서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인구 천 명당 혼인 건수가 4.2건이고 이혼 건수는 2.1건이다.<sup>6)</sup> 결혼하는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이혼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일이 아닌 흔한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혼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은 어떨까? 사회적으로 이혼이 늘어난 만큼 이혼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본회는 이혼에 대한 일반적 인식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98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이혼 의사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혼 의사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3.8%로, 이혼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사가 가진 사람들로 응답자 중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혼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가 31.6%로 이혼에 대해 소극적이지만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은 전체 95.4%로 통계청 조사 65.2%보다 높았다.<sup>7)</sup> 이는 본회

6) 통계청 보도자료(2021.03.18.), “2020년 혼인 이혼 통계”, 2021.06.05. 검색 <https://bit.ly/3vGqGZi>

조사 참여자들의 특성으로 보인다. 연령별 이혼 의사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이혼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식을 가졌고,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19.1%였고, 여성은 3.0%였다. 그리고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남성은 2.1%였던 반면 여성은 0.3%였다.

<표 18> 이혼 의사\_연령 및 성별 응답

문항	전체 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성별전체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다.	63.8	81.6	73.3	60.9	64.7	53.7	50.0	50.8	25.0	47.6	0.0	63.6	59.6
이혼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31.6	16.6	13.3	34.6	17.6	40.6	20.0	46.2	25.0	47.6	100	32.7	19.1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3.7	1.4	13.3	2.6	17.6	5.2	30.0	3.0	25.0	4.8	0.0	3.0	19.1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0.4	0.0	0.0	1.1	0.0	0.0	0.0	0.0	25.0	0.0	0.0	0.3	2.1
잘 모르겠다.	0.4	0.4	0.0	0.8	0.0	0.4	0.0	0.0	0.0	0.0	0.0	0.4	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여성: 20대(277명), 30대(266명), 40대(229명), 50대(132명), 60대(21명) 총 925명 (무응답 제외)

\*남성: 20대(15명), 30대(17명), 40대(10명), 50대(4명), 60대(1명) 총 47명

이혼 의사는 혼인경험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표 19>는 혼인경험 여부에 따른 이혼에 대한 의사이다. 혼인경험이 없는 그룹은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다’가 80.5%인데 반해 기혼 또는 이혼한 그룹은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다’가 49.8%로 약 30% 가까이 차이가 났고, ‘이혼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44.4%로, 혼인경험이 없는 그룹 16.4%보다 약 30% 이상 높았다. 이는 혼인경험이 이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7) 2021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이혼에 대한 견해를 보면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48.4%였고,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가 16.8%로 전체 65.2%가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였다. (통계청, “이혼에 대한 견해” 2021.06.05. 검색 <https://bit.ly/3w2aYsH>)

**<표 19> 이혼에 대한 의사\_혼인경험 유무**

항목	혼인한 적 없음		혼인 경험 있음	
	응답수	응답비율	응답수	응답비율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다.	363	80.5%	267	49.8%
이혼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74	16.4%	238	44.4%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12	2.7%	25	4.7%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0	0.0%	4	0.7%
잘 모르겠다.	2	0.4%	2	0.4%
사례수	449	100%	536	100%

이혼 의사는 기혼과 이혼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기혼보다 이혼이 이혼 의사에 소극적이고, 자녀가 많을수록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다’가 78%로 가장 높았고, 이혼이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다’가 36.7%로 약 40% 정도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이혼 경험이 이혼에 대해 더 신중한 입장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0> 이혼 의사\_자녀 수 및 기혼과 이혼 응답**

응답보기	전체 응답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기혼	이혼	기혼	이혼	기혼	이혼	기혼	이혼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다.	63.8%	78.0%	50.0%	57.7%	38.5%	56.8%	37.9%	62.5%	36.7%
이혼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31.6%	22.0%	29.2%	32.7%	54.9%	36.5%	62.1%	33.3%	56.7%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3.7%	0.0%	4.2%	9.6%	5.7%	6.1%	0.0%	4.2%	6.7%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0.4%	0.0%	12.5%	0.0%	0.8%	0.0%	0.0%	0.0%	0.0%
잘 모르겠다.	0.4%	0.0%	4.2%	0.0%	0.0%	0.7%	0.0%	0.0%	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자녀수(기혼): 없음(41명), 1명(52명), 2명(148명), 3명 이상(24명) 총 265명

\* 자녀수(이혼): 없음(24명), 1명(122명), 2명(95명), 3명 이상(30명) 총 271명

월 평균소득별로 이혼 의사를 보면 월 평균소득 400만 원 이하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다’가 각각 71%와 76%로 대체로 소득이 높으면 이혼 의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1> 이혼 의사\_월 평균소득별 응답

응답보기	전체 응답	소득 없음	150만 원 이하	25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4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다.	63.8%	63.3%	64%	62%	62%	71%	61%	76%
이혼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31.6%	32.0%	33%	33%	31%	24%	35%	21%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3.7%	4.1%	3%	3%	6%	5%	4%	3%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0.4%	0.0%	0%	1%	1%	0%	0%	0%
잘 모르겠다.	0.4%	0.7%	0%	1%	0%	0%	0%	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월소득별 : 월 150만 원 이하(245명), 월 250만 원 이하(351명), 월 300만 원 이하(125명), 월 400 만 원 이하(63명), 월 500만 원 이하(23명), 월 500만 원 이상(33명), 없음(147명)

(2) 이혼 사유에 대한 인식

이혼 의사에서 ‘이혼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가 전체 응답자의 31.6%였다. <표 22>는 전체 응답자가 생각하는 이혼 사유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표 22> 이혼 사유에 대한 인식\_전체 응답 비율

번호	이혼 사유 항목	이혼사유가 된다	어느 정도 된다	별로 되지 않는다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1	배우자가 가정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	63.0%	32.1%	3.9%	1.0%
2	배우자 간에 애정이 없는 경우	65.7%	27.0%	6.0%	1.4%
3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50.9%	40.8%	6.9%	1.4%
4	성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	44.6%	40.0%	13.5%	1.9%
5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61.2%	30.1%	7.2%	1.5%
6	시가(처가) 식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79.7%	16.8%	2.7%	0.7%
7	배우자가 불임인 경우	15.3%	24.1%	35.6%	25.0%
8	출산, 입양 등 자녀계획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	39.4%	38.4%	17.2%	5.0%
9	자녀 양육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	24.8%	43.9%	23.8%	7.5%
10	배우자 간에 성격이 맞지 않은 경우	58.9%	32.5%	6.9%	1.7%
11	배우자가 외도 한 경우	90.0%	8.5%	1.2%	0.3%
12	본인이 외도 한 경우	86.0%	11.1%	1.8%	1.0%
13	배우자가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등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	93.8%	5.4%	0.6%	0.2%
14	배우자가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	97.1%	1.4%	1.0%	0.5%
15	배우자가 동의 없이 강제적 성적 행동을 요구하거나 행사한 경우	91.3%	7.2%	1.2%	0.3%
16	배우자가 술, 도박, 약물, 쇼핑 등 중독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92.6%	6.1%	0.9%	0.4%
17	배우자의 생사 확인이 3년 이상 안 된 경우	83.5%	13.5%	2.2%	0.8%
18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보호를 거부하거나 보호를 하지 않은 경우	91.1%	7.5%	0.9%	0.5%

<표 22>를 보면 가정폭력, 중독, 외도, 유기, 생사 확인 불분명한 사유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응답이 80% 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불임, 자녀 계획과 양육방식의 차이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비율이 다른 사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가(처가) 식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79.7%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61.2%가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3>은 이혼 소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생각하는 이혼 사유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이혼 소송 경험이 있는 그룹도 전체 응답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율적으로 이혼 사유가 어느 정도 된다는 응답 비율이 <일반인식 조사> 참여자들보다 높았다. 이는 이혼 의사에서도 비슷한 모습인데, 이혼 경험이 이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3> 이혼 사유에 대한 이혼 소송 경험자 그룹 응답 비율**

번호	이혼 사유 항목	이혼사유가 된다	어느 정도 된다	별로 되지 않는다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1	배우자가 가정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	46.6%	39.2%	10.5%	3.7%
2	배우자 간에 애정이 없는 경우	51.4%	38.5%	7.1%	3.0%
3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35.8%	51.0%	10.5%	2.7%
4	성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	39.5%	40.5%	15.5%	4.4%
5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55.4%	33.8%	7.4%	3.4%
6	시가(처가) 식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64.2%	27.4%	6.8%	1.7%
7	배우자가 불임인 경우	17.9%	33.8%	27.4%	20.9%
8	출산, 입양 등 자녀계획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	24.3%	44.6%	24.7%	6.4%
9	자녀 양육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	22.3%	41.9%	27.7%	8.1%
10	배우자 간에 성격이 맞지 않은 경우	49.7%	35.5%	11.5%	3.4%
11	배우자가 외도 한 경우	79.4%	15.2%	3.4%	2.0%
12	본인이 외도 한 경우	77.4%	17.2%	3.4%	2.0%
13	배우자가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등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	83.1%	11.1%	4.1%	1.7%
14	배우자가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	87.2%	7.4%	3.0%	2.4%
15	배우자가 동의 없이 강제적 성적 행동을 요구하거나 행사한 경우	75.3%	18.9%	4.7%	1.0%
16	배우자가 술, 도박, 약물, 쇼핑 등 중독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85.5%	9.5%	3.4%	1.7%
17	배우자의 생사 확인이 3년 이상 안 된 경우	72.6%	19.9%	4.7%	2.7%
18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보호를 거부하거나 보호를 하지 않은 경우	80.4%	14.2%	4.4%	1.0%

### (3) 이혼에 대한 고려 점

일반적으로 이혼을 고민할 때 우선 무엇을 먼저 고려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24>

를 보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경제적 자립이었고, 8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68.7%로 자녀 양육문제였다. 연령별로 이혼에 대한 고려 점을 보면 경제적 자립을 가장 많이 선택한 연령은 40대였다. 자녀양육 문제에서 50대와 60대는 각각 55.9%, 50%로 다른 연령에 비해 비율이 낮았다. 이는 이 연령대의 자녀들이 대부분 성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심리적 자립에 대한 부분은 60대가 63.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20대도 35.2%가 심리적 자립을 우선 고려사항으로 꼽아 이혼 시 심리적 자립도 중요한 사항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4> 이혼 시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점\_연령별(중복응답)**

항목	전체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경제적 자립	88.4%	89.7%	86.4%	92.1%	86.8%	68.2%
심리적 자립	31.0%	35.2%	32.2%	21.8%	30.9%	63.6%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양육문제	68.7%	71.1%	71.0%	72.0%	55.9%	50.0%
가족 등 주변인의 동의 여부	1.1%	0.3%	3.1%	0.4%	0.0%	0.0%
주변인의 시선과 편견	2.2%	1.7%	2.8%	2.1%	2.2%	4.5%
기타	0.3%	0.0%	0.0%	0.8%	0.7%	0.0%
사례수	987	301	286	239	136	22

<표 25>는 혼인 경험 유무로 알아본 이혼 시 고려 점이다. 혼인 경험이 없는 그룹은 경제적 자립이 90.2%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심리적 자립도 36.1%로 혼인 경험이 있는 그룹 26.7%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 경험이 있는 그룹은 주변인의 시선과 편견, 가족의 동의 여부가 혼인 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25> 이혼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_혼인 경험 유무(중복응답)**

항목	혼인 경험 없음		혼인 경험 있음	
	답변수	답변비율	답변수	답변비율
경제적 자립	407	90.2%	466	86.9%
심리적 자립	163	36.1%	143	26.7%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양육문제	308	68.3%	370	69.0%
가족 등 주변인의 동의 여부	4	0.9%	7	1.3%
주변인의 시선과 편견	7	1.6%	15	2.8%
기타	0	0.0%	3	0.6%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자녀 수와 기혼과 이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알아보았다. 기혼과 이혼 모두 이혼 시 고려할 점으로 경제적 자립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비율 면에서 보면 기혼 그룹은 90.2%, 이혼 그룹은 86.9%였고, 이혼 그룹이 조금 낮았다. 대신 이혼 그룹은 가족 등 주변인의 동의와 주변인의 시선과 편견이 기혼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혼을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나온 결과로 이혼에 대한 주변인의 시선과 편견이 어느 정도 존재하며, 가족 등 주변인의 동의가 이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표

26> 보면 이혼 그룹은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양육 문제가 기혼 그룹보다 우선 고려 점이었고,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경제적 자립과 같은 비율로 자녀양육 문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26> 이혼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_자녀 수 및 기혼과 이혼 응답 (중복응답)

응답보기	전체 응답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기혼	이혼	기혼	이혼	기혼	이혼	기혼	이혼
경제적 자립	88.4%	90.2%	75.0%	90.4%	84.4%	90.5%	83.2%	91.7%	86.7%
심리적 자립	31.0%	39.0%	37.5%	28.8%	18.9%	30.4%	23.2%	37.5%	13.3%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양육문제	68.7%	61.0%	45.8%	71.2%	78.7%	65.5%	74.7%	29.2%	86.7%
가족 등 주변인의 동의 여부	1.1%	2.4%	4.2%	0.0%	3.3%	0.0%	1.1%	0.0%	0.0%
주변인의 시선과 편견	2.2%	2.4%	0.0%	1.9%	4.9%	2.7%	3.2%	0.0%	0.0%
기타	0.3%	0.0%	0.0%	0.0%	0.8%	0.0%	0.0%	0.0%	3.3%

\* 자녀수(기혼): 없음(41명), 1명(52명), 2명(148명), 3명 이상(24명) 총 265명

\* 자녀수(이혼): 없음(24명), 1명(122명), 2명(95명), 3명 이상(30명) 총 271명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전체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적 자립, 자녀양육 문제, 심리적 자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경제적 자립과 함께 심리적 자립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자녀양육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이혼한 그룹은 가족 등 주변인의 동의와 주변인의 시선과 편견이 낮은 비율이지만 다른 그룹에 비해 어느 정도 고려 대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심리적 자립의 경우, 20대와 60대가 전체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혼 그룹 또한 전체비율보다 높게 나와 경제적 자립과 함께 심리적 자립도 이혼 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

<표 24>에서 이혼 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주변인의 시선과 편견이 고려 사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였다. 다른 문항에 비해 비율은 낮지만 이혼에 대해 주변인의 시선과 편견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표 26> 에서 이혼 그룹은 기혼 그룹에 비해 주변인의 시선과 편견이 이혼 시 고려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이혼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표 27>은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의 결과이다. 표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고정관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고정관념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고정관념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미로 고정관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고정관념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 동의하는 응답은 고정관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7>을 보면 각 문항에 대체로 동의하는 응답보다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높았다.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가장 높은 문항은 '이혼한 사람은 스킨십이 매우 자유

롭고 허용적일 것으로 생각한다.’(95.7%)였고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자녀는 되도록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34%)였다. 그다음으로 낮은 문항은 ‘한부모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21.2%)였다. 이 두 질문은 ‘정상 가족’과 관련된 문항으로 이 문항의 동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정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별로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문항 1, 2의 동의 비율이 높았고, 남성의 경우 ‘이혼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라는 문항이 여성보다 동의 비율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10.3%인데 비해 남성은 25.5%가 ‘이혼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이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7>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_나의 인식\_전체응답과 성별

문항	전체 응답자				여성				남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자녀는 되도록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	38.5%	27.6%	29.3%	4.7%	37.4%	27.8%	30.0%	4.8%	46.8%	27.7%	23.4%	2.1%
2. 한부모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	47.8%	30.9%	18.9%	2.3%	47.5%	31.3%	18.8%	2.5%	42.6%	31.9%	25.5%	0.0%
3. 이혼은 개인적인 흠 또는 집안 흠이라고 생각한다.	60.6%	24.4%	12.9%	2.1%	60.0%	25.2%	12.6%	2.2%	61.7%	14.9%	21.3%	2.1%
4. 이혼한 사람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4.9%	27.2%	7.1%	0.8%	64.1%	28.2%	6.9%	0.8%	72.3%	12.8%	12.8%	2.1%
5. 이혼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67.2%	22.0%	10.1%	0.7%	67.5%	22.3%	9.5%	0.8%	53.2%	21.3%	25.5%	0.0%
6. 이혼한 사람은 스킨십이 매우 자유롭고 허용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80.3%	15.4%	3.4%	0.8%	80.4%	15.5%	3.2%	0.9%	74.5%	17.0%	8.5%	0.0%

<표 28>은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떤지에 대한 설문 결과표이다. 문항 1, 2의 동의 응답이 각각 88.2%, 84.6%로 동의 응답이 높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정상 가족 이

테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표 28>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_우리 사회의 인식\_전체응답**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자녀는 되도록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	5.1%	6.7%	47.1%	41.1%
2	한부모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	5.9%	9.5%	55.0%	29.6%
3	이혼은 개인적인 흠 또는 집안 흠이라고 생각한다.	6.6%	12.1%	52.0%	29.4%
4	이혼한 사람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9%	20.2%	52.9%	18.0%
5	이혼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10.3%	22.8%	50.6%	16.3%
6	이혼한 사람은 스킨십이 매우 자유롭고 허용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15.2%	35.5%	40.6%	8.7%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은 혼인경험 유무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표 29>를 보면 혼인경험이 없는 그룹이 전체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낮고, 혼인경험이 있는 그룹은 전체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혼인경험이 있는 그룹이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항 1, 2의 경우 혼인경험이 있는 그룹의 동의 비율이 각각 42.4%, 25.7%인데 반해 혼인경험이 없는 그룹은 24%, 19%로 비율이 10% 이상 차이가 났다. 이외 질문에도 혼인 유무에 따라 동의 비율의 차이가 있어 혼인경험이 있는 그룹이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혼인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_혼인경험 유무**

번호	문항	혼인 경험 없음				혼인 경험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자녀는 되도록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	47.5%	28.6%	21.1%	2.9%	31.0%	26.7%	36.2%	6.2%
2	한부모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	58.8%	25.3%	15.3%	0.7%	38.6%	35.6%	22.0%	3.7%
3	이혼은 개인적인 흠 또는 집안 흠이라고 생각한다	75.8%	15.5%	8.2%	0.4%	47.8%	31.9%	16.8%	3.5%
4	이혼한 사람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4.7%	21.5%	3.8%	0.0%	56.7%	31.9%	9.9%	1.5%
5	이혼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78.0%	15.3%	6.7%	0.0%	58.0%	27.6%	13.1%	1.3%
6	이혼한 사람은 스킨십이 매우 자유롭고 허용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88.2%	9.3%	1.8%	0.7%	73.7%	20.5%	4.9%	0.9%

<표 30>은 혼인 경험 유무와 연령별로 보는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 결과표이다. <표 30>을

보면 20대 혼인경험이 없는 그룹이 대체로 동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왔다. 그리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져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혼인한 그룹이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는데 그중에 ‘자녀는 되도록 아버지 어머니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는 문항이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대의 경우 47.6%가 동의하였다. 그런데 문항 1은 20대도 다른 문항에 비해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과 혼인 유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혼인 경험이 있는 20대의 경우 ‘이혼은 개인적인 흠, 가족의 흠이다.’, ‘이혼한 사람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혼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는 문항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동의 비율이 높게 나왔다. 응답 인원이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혼인 경험이 없는 20대보다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_연령별 혼인경험 유무

항목	연령별	혼인경험 있음				혼인 경험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자녀는 되도록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	20대	36.8%	26.3%	26.3%	10.5%	50.0%	30.1%	17.7%	2.1%
	30대	28.8%	31.3%	32.5%	7.5%	46.8%	24.6%	24.6%	4.0%
	40대	34.0%	23.8%	36.4%	5.8%	39.4%	27.3%	33.3%	0.0%
	50대	28.9%	25.8%	39.8%	5.5%	12.5%	37.5%	37.5%	12.5%
	60대	28.6%	23.8%	47.6%	0.0%	0.0%	100.0%	0.0%	0.0%
	기타	0.0%	50.0%	50.0%	0.0%	0.0%	0.0%	0.0%	100.0%
2. 한부모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	20대	47.4%	36.8%	10.5%	5.3%	61.3%	25.2%	13.1%	0.4%
	30대	36.3%	37.5%	19.4%	6.9%	58.7%	20.6%	19.0%	1.6%
	40대	39.8%	33.0%	24.3%	2.9%	42.4%	39.4%	18.2%	0.0%
	50대	39.8%	35.9%	22.7%	1.6%	50.0%	25.0%	25.0%	0.0%
	60대	33.3%	42.9%	23.8%	0.0%	0.0%	100%	0.0%	0.0%
	기타	0.0%	50.0%	50.0%	0.0%	0.0%	100%	0.0%	0.0%
3. 이혼은 개인적인 흠 또는 집안 흠이라고 생각한다.	20대	47.4%	21.1%	31.6%	0.0%	78.0%	16.7%	5.0%	0.4%
	30대	48.1%	30.6%	15.0%	6.3%	74.6%	13.5%	11.1%	0.8%
	40대	49.5%	27.7%	19.4%	3.4%	69.7%	6.1%	24.2%	0.0%
	50대	46.1%	41.4%	10.9%	1.6%	62.5%	37.5%	0.0%	0.0%
	60대	42.9%	38.1%	19.0%	0.0%	0.0%	100%	0.0%	0.0%
	기타	0.0%	0.0%	100%	0.0%	0.0%	0.0%	100%	0.0%
4. 이혼한 사람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0대	52.6%	26.3%	21.1%	0.0%	79.8%	17.7%	2.5%	0.0%
	30대	52.5%	35.6%	9.4%	2.5%	65.1%	29.4%	5.6%	0.0%
	40대	59.7%	28.6%	10.2%	1.5%	66.7%	27.3%	6.1%	0.0%
	50대	59.4%	33.6%	6.3%	0.8%	75.0%	12.5%	12.5%	0.0%
	60대	47.6%	33.3%	19.0%	0.0%	100.0%	0.0%	0.0%	0.0%
	기타	50.0%	0.0%	50.0%	0.0%	100.0%	0.0%	0.0%	0.0%
5. 이혼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20대	57.9%	21.1%	21.1%	0.0%	81.2%	13.1%	5.7%	0.0%
	30대	58.1%	22.5%	17.5%	1.9%	75.4%	16.7%	7.9%	0.0%
	40대	56.8%	28.2%	13.6%	1.5%	63.6%	27.3%	9.1%	0.0%
	50대	60.9%	32.8%	5.5%	0.8%	62.5%	25.0%	12.5%	0.0%
	60대								

	60대	52.4%	38.1%	9.5%	0.0%	100%	0.0%	0.0%	0.0%
	기타	50.0%	0.0%	50.0%	0.0%	100%	0.0%	0.0%	0.0%
6. 이혼한 사람은 스킨십이 매우 자유롭고 허용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20대	78.9%	21.1%	0.0%	0.0%	89.7%	7.8%	1.8%	0.7%
	30대	73.8%	18.1%	5.6%	2.5%	88.9%	10.3%	0.8%	0.0%
	40대	72.8%	21.4%	5.3%	0.5%	72.7%	18.2%	6.1%	3.0%
	50대	75.0%	21.9%	3.1%	0.0%	87.5%	12.5%	0.0%	0.0%
	60대	71.4%	23.8%	4.8%	0.0%	100%	0.0%	0.0%	0.0%
	기타	50.0%	0.0%	50.0%	0.0%	100%	0.0%	0.0%	0.0%

\* 혼인유&연령별 응답자 수: 20대(19명), 30대(160명), 40대(206명), 50대(128명), 60대(21명) 총 534명

\* 혼인무&연령별 응답자 수: 20대(282명), 30대(126명), 40대(33명), 50대(8명), 60대(1명) 총 450명

혼인유형과 자녀 수에 따라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았다. 아래 <표 31>을 보면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낮고, 자녀가 늘어날수록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동의 비율은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였고, ‘한부모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하다’와 ‘이혼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순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표 31>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_ 기혼, 자녀수

문항	없음				1명				2명				3명이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자녀는 되도록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	43.9%	39.0%	17.1%	0.0%	30.8%	32.7%	30.8%	5.8%	27.7%	25.0%	39.2%	8.1%	20.8%	33.3%	33.3%	12.5%
2. 한부모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	58.5%	36.6%	4.9%	0.0%	40.4%	38.5%	15.4%	5.8%	35.1%	33.8%	29.1%	2.0%	45.8%	29.2%	20.8%	4.2%
3. 이혼은 개인적인 흠 또는 집안 흠이라고 생각한다.	80.5%	17.1%	2.4%	0.0%	59.6%	28.8%	9.6%	1.9%	45.9%	36.5%	15.5%	2.0%	54.2%	25.0%	12.5%	8.3%
4. 이혼한 사람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3.2%	19.5%	7.3%	0.0%	53.8%	38.5%	5.8%	1.9%	54.1%	35.1%	9.5%	1.4%	79.2%	8.3%	12.5%	0.0%
5. 이혼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73.2%	22.0%	4.9%	0.0%	61.5%	25.0%	11.5%	1.9%	56.8%	29.7%	12.2%	1.4%	54.2%	37.5%	8.3%	0.0%
6. 이혼한 사람은 스킨십이 매우 자유롭고 허용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85.4%	9.8%	4.9%	0.0%	80.8%	15.4%	0.0%	3.8%	68.2%	25.7%	5.4%	0.7%	70.8%	20.8%	8.3%	0.0%

\* 자녀수(기혼): 없음(41명), 1명(52명), 2명(148명), 3명 이상(24명) 총 265명

이혼 경험이 있는 그룹의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은 <표 32>와 같다. <표 32>를 보면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가 가장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자녀가 2명인 경우 동의 비율이 50.5%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동의 비율이 높은 문항은 ‘한부모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였고, ‘이혼은 개인적인 흠 집안의 흠이라고 생각한다.’ 순이었다. ‘이혼은 개인적인 흠 집안의 흠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은 다른 그룹에서는 동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문항인데 이혼 경험이 있는 그룹은 동의 비율을 비교적 높았고, 자녀가 1명인 그룹은 동의 비율이 30.4%가 나와 다른 그룹과 대조적이었다.

<표 32>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_ 이혼, 자녀수

문항	없음				1명				2명				3명이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자녀는 되도록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	45.8%	29.2%	20.8%	4.2%	29.5%	23.0%	41.8%	5.7%	27.4%	22.1%	44.2%	6.3%	43.3%	30.0%	23.3%	3.3%
2. 한부모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	41.7%	25.0%	16.7%	16.7%	28.7%	42.6%	26.2%	2.5%	38.9%	34.7%	21.1%	5.3%	56.7%	26.7%	13.3%	3.3%
3. 이혼은 개인적인 흠 또는 집안 흠이라고 생각한다.	58.3%	8.3%	16.7%	16.7%	35.2%	34.4%	26.2%	4.1%	37.9%	37.9%	20.0%	4.2%	60.0%	30.0%	10.0%	0.0%
4. 이혼한 사람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2.5%	12.5%	16.7%	8.3%	49.2%	36.9%	13.1%	0.8%	53.7%	34.7%	9.5%	2.1%	70.0%	26.7%	3.3%	0.0%
5. 이혼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58.3%	12.5%	25.0%	4.2%	49.2%	32.8%	17.2%	0.8%	58.9%	26.3%	13.7%	1.1%	73.3%	16.7%	6.7%	3.3%
6. 이혼한 사람은 스킨십이 매우 자유롭고 허용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75.0%	8.3%	8.3%	8.3%	67.2%	27.0%	5.7%	0.0%	77.9%	16.8%	5.3%	0.0%	86.7%	13.3%	0.0%	0.0%

\* 자녀수(이혼): 없음(24명), 1명(122명), 2명(95명), 3명 이상(30명) 총 271명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각각의 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문항 1과 문항 2이다. 이 문항은 정상 가족과 관련한 고정관념인데 두 문항은 모든 그룹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비율만 달랐지 모든 그룹에서 다른 문항의 동의 비율보다 높았다. 지금까지 비교적 이혼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사가 높았던 20대와 혼인 경험이 없는 그룹도 다른 문항에 비해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혼인 경험이 없는 그룹은 성역할 태도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 성평등한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다른 그룹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 (5) 이혼 제도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나라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시 거쳐야 하는 제도들은 2007년 민법개정을 통

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통해 현재 이혼 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조사 내용에 포함된 제도는 의무면담제도, 부부상담, 이혼숙려제도, 자녀 면접교섭 사전처분, 양육비 사전처분, 자녀양육안내교육 총 6가지였다.

### ① 의무면담제도

의무면담제도는 협의이혼 시 이혼에 대한 안내와 이혼 과정 전후의 심리적, 정서적 원조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부 상담 등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의무 사항으로 두고 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없는 부부는 면담을 거친 후에 협의이혼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의무면담제도에 대해 참여자들은 69.9%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30.1%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대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60대의 경우 불필요가 54.5%로 필요보다 불필요가 높았다. 성별로 보면 여남의 차이는 없었으나 20대가 조금 높게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혼인경험 유무에서는 혼인경험이 있는 그룹은 불필요가 높았고, 혼인경험이 없는 그룹이 필요성이 조금 더 높았다. 혼인경험유무와 연령대를 보면 혼인경험이 있는 20대가 필요가 조금 더 높았고, 혼인경험이 없는 30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혼인 형태별로 보면 이혼 경험이 있는 그룹이 불필요한 제도라는 응답이 높았다. 전체 응답자는 의무면담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혼한 그룹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그룹보다 높았다. 특히 아이가 없는 이혼 그룹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8.3%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았다.

의무면담제도는 이혼에 대한 안내 제도로 이혼 신청 시 당사자들에게 부부 상담 안내를 비롯해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고 한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의무사항으로 두고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했으나 이혼한 그룹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표 33> 의무면담제도\_전체응답자 연령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필요	30.1%	20.6%	30.8%	33.9%	39.7%	54.5%
필요	69.9%	79.4%	69.2%	66.1%	60.3%	45.5%

<표 34> 의무면담제도\_성별 연령

성별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	불필요	30.2%	20.9%	30.8%	33.2%	39.4%	57.1%
	필요	69.8%	79.1%	69.2%	66.8%	60.6%	42.9%
남성	불필요	31.9%	20.0%	29.4%	50.0%	50.0%	0.0%
	필요	68.1%	80.0%	70.6%	50.0%	50.0%	100%

<표 35> 의무면담제도\_혼인경험유무 연령

혼인유무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혼인경험 있음	불필요	35.3%	26.3%	28.8%	36.9%	39.1%	57.1%
	필요	64.7%	73.7%	71.3%	63.1%	60.9%	42.9%
혼인 경험 없음	불필요	23.9%	20.2%	33.3%	15.2%	50.0%	0.0%
	필요	76.1%	79.8%	66.7%	84.8%	50.0%	100%

<표 36> 의무면담제도\_혼인형태 자녀수

혼인유형	문항	전체응답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기혼	불필요	30.2%	24.4%	28.8%	30.4%	41.7%
	필요	69.8%	75.6%	71.2%	69.6%	58.3%
이혼	불필요	40.2%	58.3%	37.7%	41.1%	33.3%
	필요	59.8%	41.7%	62.3%	58.9%	66.7%

## ② 부부 상담

협의이혼 시 부부가 원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상담전문가와 장기간 부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판상 이혼 시 판사의 명령으로 부부 상담을 받기도 한다. 부부 상담에 대해 참여자들은 6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3.1%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73.1%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50대는 불필요가 61.8%로 부부 상담에 대해 필요보다 불필요가 더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필요성을 좀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20대가, 여성의 경우는 30대가 필요성을 다른 연령대보다 좀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경험유무로 보면 혼인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필요성을 좀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필요성 비율은 혼인경험 없는 20대가 가장 높았다. 혼인 형태별로 보면 기혼이 이혼 그룹보다 필요성을 좀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2명인 이혼 그룹은 41.1%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불필요 비율이 높았다.

<표 37> 부부상담\_전체응답 연령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필요	33.1%	26.9%	31.8%	37.7%	61.8%	59.1%
필요	66.9%	73.1%	68.2%	62.3%	38.2%	40.9%

<표 38> 부부상담\_성별 연령

성별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	불필요	33.6%	27.8%	32.7%	36.7%	38.6%	61.9%
	필요	66.4%	72.2%	67.3%	63.3%	61.4%	38.1%
남성	불필요	27.7%	20.0%	17.6%	60.0%	25.0%	0.0%
	필요	72.3%	80.0%	82.4%	40.0%	75.0%	100.0%

<표 39> 부부상담\_혼인유무 연령

혼인유무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혼인경험있음	불필요	36.2%	36.8%	29.4%	38.8%	37.5%	57.1%
	필요	63.8%	63.2%	70.6%	61.2%	62.5%	42.9%
혼인경험없음	불필요	29.5%	26.2%	34.9%	30.3%	50.0%	100.0%
	필요	70.5%	73.8%	65.1%	69.7%	50.0%	0.0%

<표 40> 부부상담\_혼인형태 자녀수

혼인형태	문항	전체응답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기혼	불필요	32.8%	22.0%	34.6%	33.8%	41.7%
	필요	67.2%	78.0%	65.4%	66.2%	58.3%
이혼	불필요	39.5%	33.3%	36.9%	41.1%	50.0%
	필요	60.5%	66.7%	63.1%	58.9%	50.0%

상담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스스로 문제를 인정했을 때 상담 효과가 있다. 그런데 현재 가정법원에서 운영하는 부부 상담은 부부가 모두 동의해서 운영되기보다 의무상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부부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때 상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부부 상담에서 가해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이혼 숙려제도

이혼 숙려제도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 이상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을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이혼 숙려 제도는 일시적인 감정 충동에 의한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다.<sup>8)</sup>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혼 숙려제도에 대해 참여자들은 53%가 필요하다고, 47%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해 다른 제도에 비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연령 별로 보면 20대와 60대는 필요보다 불필요가 높았고, 40대는 59.8%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적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성을 더 느꼈다. 그런데 남성은 20대와 30대는 필요가 높지만 40대와 50대는 불필요가 더 높았다. 혼인경험유무로 보면 혼인경험이 없는 그룹은 대체로 이혼 숙려제도에 대해 필요보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연령 별로 보면 50대는 75%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혼인 형태와 자녀 수로 보면 아이가 없는 이혼한 그룹은 이혼 숙려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었고, 월 소득별로 봤을 때 500만 원 이상 고소득인 그룹에서 불필요가 필요보다 높았다.

<표 41> 이혼 숙려제도\_전체응답연령

8) 송호금, “‘충동 이혼’ 제도적 금지방안 추진”, SBS, 2003.11.23. <https://bit.ly/35DQ9bj>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필요	47.0%	50.5%	49.7%	40.2%	43.4%	59.1%
필요	53.0%	49.5%	50.3%	59.8%	56.6%	40.9%

<표 42> 이혼 숙려제도\_성별연령

성별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	불필요	47.1%	50.9%	51.1%	39.3%	43.2%	61.9%
	필요	52.9%	49.1%	48.9%	60.7%	56.8%	38.1%
남성	불필요	40.4%	33.3%	35.3%	60.0%	50.0%	0.0%
	필요	59.6%	66.7%	64.7%	40.0%	50.0%	100.0%

<표 43> 이혼 숙려제도\_혼인경험유무 연령

혼인경험유무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혼인경험있음	불필요	42.4%	36.8%	45.6%	39.8%	41.4%	57.1%
	필요	57.6%	63.2%	54.4%	60.2%	58.6%	42.9%
혼인경험없음	불필요	52.5%	51.4%	56.3%	42.4%	75.0%	100.0%
	필요	47.5%	48.6%	43.7%	57.6%	25.0%	0.0%

<표 44> 이혼 숙려제도\_혼인형태 자녀수

혼인형태	문항	전체응답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기혼	불필요	40.0%	43.9%	50.0%	34.5%	45.8%
	필요	60.0%	56.1%	50.0%	65.5%	54.2%
이혼	불필요	44.6%	54.2%	44.3%	43.2%	43.3%
	필요	55.4%	45.8%	55.7%	56.8%	56.7%

<표 45> 이혼 숙려제도\_월별 소득

문항	없음	150만원이하	25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500만원이상
불필요	48.3%	46.5%	46.4%	48.8%	44.4%	39.1%	54.5%
필요	51.7%	53.5%	53.6%	51.2%	55.6%	60.9%	45.5%

이혼 숙려제도는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혼을 성급하게 결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통계청의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통계를 보면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가장 많았다.9) 이는 이혼을 성급하게 결정한다기보다 오랜 시간 참고 견디며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혼 숙려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혼인 및 가족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제도이다. 본 설문조사에서 이혼 숙려제도는 불필요 응답이 다른 제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 숙려제도가 그만큼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혼 숙려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9) 통계청 보도자료(2021.03.18.), “2020년 혼인 이혼 통계”, 2021.06.05. 검색 <https://bit.ly/3vGqGZi>

#### ④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을 내리기 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유지하는 일정한 처분을 말한다.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이혼 소송 중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 양육자가 자녀 면접 및 교섭을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에 대해 76.8%가 필요하다고 했고, 23.3%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령 별로 보면 20대는 81.7%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낮아졌으나 불필요가 필요에 비해 높아지지 않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필요성을 느꼈다. 남성의 경우 전체 89.4%가 필요하다고 했고, 30대 남성의 경우 94.1%로 가장 높았다. 여성은 20대가 81.7%로 필요가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필요비율이 낮아졌다. 혼인경험유무로 보면 혼인경험이 있는 50대가 필요비율이 낮았는데 50대의 경우 자녀가 대부분 성장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혼인 형태로 보면 기혼자의 필요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전체 응답률보다 높았다.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자녀가 2명인 이혼한 그룹이었다. 월 소득별로 보면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표 46>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_전체응답 연령**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필요	23.2%	18.3%	23.4%	23.4%	30.9%	40.9%
필요	76.8%	81.7%	76.6%	76.6%	69.1%	59.1%

**<표 47>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_성별 연령**

성별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	불필요	23.8%	18.4%	24.8%	23.6%	31.1%	42.9%
	필요	76.2%	81.6%	75.2%	76.4%	68.9%	57.1%
남성	불필요	10.6%	6.7%	5.9%	20.0%	25.0%	0.0%
	필요	89.4%	93.3%	94.1%	80.0%	75.0%	100.0%

**<표 48>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_혼인경험 유무 연령**

혼인경험유무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혼인경험있음	불필요	26.9%	15.8%	26.3%	24.8%	30.5%	42.9%
	필요	73.1%	84.2%	73.8%	75.2%	69.5%	57.1%
혼인경험없음	불필요	18.8%	18.4%	19.8%	15.2%	37.5%	0.0%
	필요	81.2%	81.6%	80.2%	84.8%	62.5%	100.0%

**<표 49>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_혼인형태 자녀수**

혼인형태	문항	전체응답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기혼	불필요	19.6%	7.3%	19.2%	23.0%	20.8%
	필요	80.4%	92.7%	80.8%	77.0%	79.2%
이혼	불필요	33.9%	33.3%	30.3%	40.0%	30.0%
	필요	66.1%	66.7%	69.7%	60.0%	70.0%

**<표 50>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_월 평균소득**

문항	없음	150만원이하	25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500만원이상
불필요	26.5%	21.2%	25.6%	25.6%	14.3%	8.7%	15.2%
필요	73.5%	78.8%	74.4%	74.4%	85.7%	91.3%	84.8%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 자녀에게 이 제도는 가해자와 대면해야 하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자 공포의 순간이다.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은 이혼 소송 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소송의 경우 피해 자녀의 안전과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양육비 사전처분**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중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7.8%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가 97~99%의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98.1% 남성이 91.5%로 약간 차이를 보였고, 혼인경험유무, 혼인형태로 보면 대부분 95% 이상 높게 양육비 사전처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보통 소송 기간만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 양육을 위한 양육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녀복지를 위해 이혼 소송과정에서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51> 양육비 사전처분\_전체응답 연령**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필요	2.2%	0.7%	3.1%	2.1%	1.5%	18.2%
필요	97.8%	99.3%	96.9%	97.9%	98.5%	81.8%

**<표 52> 양육비 사전처분\_성별 연령**

성별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	불필요	1.9%	0.7%	2.6%	1.7%	0.8%	19.0%
	필요	98.1%	99.3%	97.4%	98.3%	99.2%	81.0%
남성	불필요	8.5%	0.0%	5.9%	10.0%	75.0%	100%
	필요	91.5%	100.0%	94.1%	90.0%	25.0%	0.0%

**<표 53> 양육비 사전처분\_혼인유무 연령**

혼인경험유무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혼인경험있음	불필요	3.0%	0.0%	4.4%	1.9%	1.6%	14.3%
	필요	97.0%	100.0%	95.6%	98.1%	98.4%	85.7%
혼인경험없음	불필요	1.3%	0.7%	1.6%	3.0%	0.0%	0.0%
	필요	98.7%	99.3%	98.4%	97.0%	100.0%	100.0%

**<표 54> 양육비 사전처분\_혼인형태 자녀수**

혼인형태	문항	전체응답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기혼	불필요	3.4%	0.0%	3.8%	3.4%	8.3%
	필요	96.6%	100.0%	96.2%	96.6%	91.7%
이혼	불필요	2.6%	4.2%	1.6%	2.1%	6.7%
	필요	97.4%	95.8%	98.4%	97.9%	93.3%

⑥ 자녀양육안내

자녀양육안내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적, 정서적 영향, 이혼 이후에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이 교육을 들어야 협의이혼 신청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당사자는 모두 들어야 하는 필수 참석교육이다. 자녀양육안내는 가사조사관이 직접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전국 가정법원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제도로, 서울가정법원은 2008년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sup>10)</sup> 자녀양육안내에 대한 필요성은 76.8%가 동의했고, 23.2%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령 별로 보면 20대가 81.1%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60대가 50%로 가장 낮은 비율로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20대 남성의 경우 필요비율이 66.7%로 다른 연령대 남성에 비해 필요비율이 낮았다. 혼인경험 유무로 보면 혼인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보다 필요비율이 높았고, 이혼보다 기혼이 필요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자녀가 1명인 이혼 그룹의 필요비율은 80.3%로 다른 이혼 그룹보다 필요비율이 높았다.

**<표 55> 자녀양육안내\_전체응답 연령**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필요	23.2%	18.9%	21.3%	27.6%	24.3%	50.0%
필요	76.8%	81.1%	78.7%	72.4%	75.7%	50.0%

**<표 56> 자녀양육안내\_성별 연령**

성별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	불필요	23.4%	18.1%	22.2%	27.9%	24.2%	52.4%
	필요	76.6%	81.9%	77.8%	72.1%	75.8%	47.6%
남성	불필요	21.3%	33.3%	11.8%	20.0%	25.0%	0.0%
	필요	78.7%	66.7%	88.2%	80.0%	75.0%	100.0%

**<표 57> 자녀양육안내\_혼인경험유무 연령**

혼인경험유무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혼인경험있음	불필요	25.9%	5.3%	22.5%	29.1%	25.0%	47.6%
	필요	74.1%	94.7%	77.5%	70.9%	75.0%	52.4%
혼인경험없음	불필요	20.0%	19.9%	19.8%	18.2%	12.5%	100.0%
	필요	80.0%	80.1%	80.2%	81.8%	87.5%	0.0%

10) 최영길, “협의이혼 하려면 '자녀양육안내' 들어야”, 법률신문, 2012.10.31. <https://bit.ly/3zcmZ0D>

**<표 58> 자녀양육안내\_혼인형태 연령**

혼인형태	문항	전체응답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기혼	불필요	24.9%	24.4%	23.1%	26.4%	20.8%
	필요	75.1%	75.6%	76.9%	73.6%	79.2%
이혼	불필요	26.9%	25.0%	19.7%	38.9%	20.0%
	필요	73.1%	75.0%	80.3%	61.1%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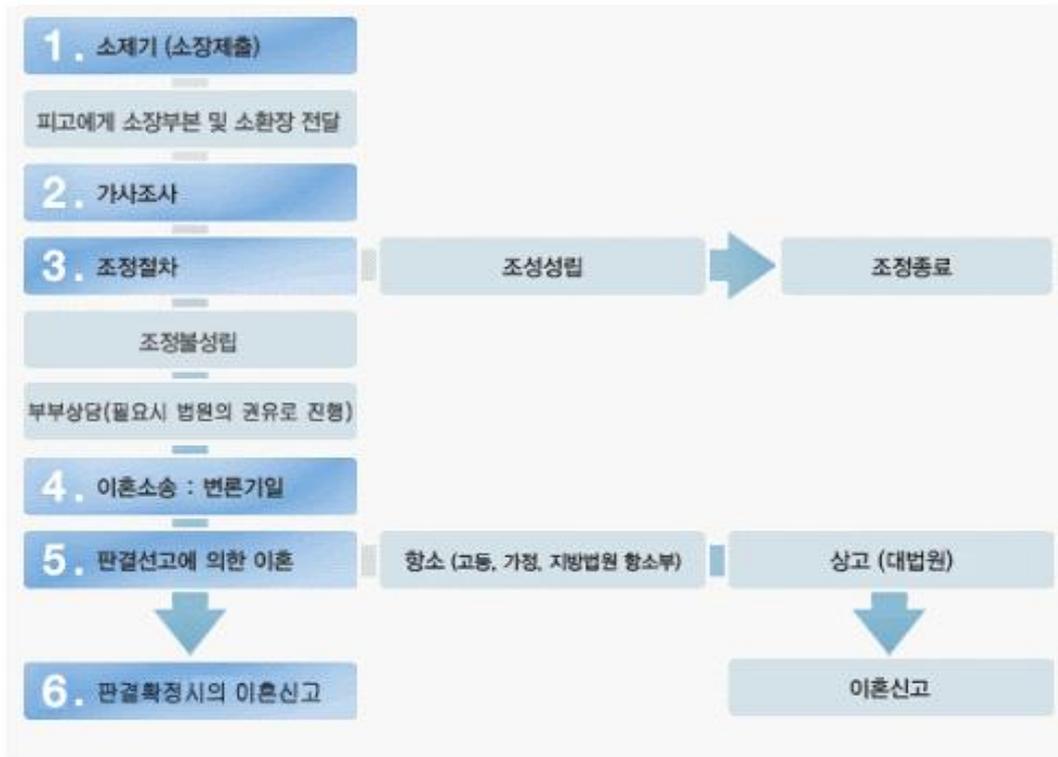
자녀양육안내교육은 이혼 자녀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역할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내용이 자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칫 교육받는 부모가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되는 배경이 각자 다르고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교육내용 및 방법이 중요한데, 대부분 시청각 교육으로 대체하고, 동영상을 보고 확인서만 받고 제출만 하면 되는 매우 형식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혼과 관련한 주요한 제도를 중심으로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로 알아보았다.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6가지 제도에 대해 참여자들은 대부분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6가지 제도 중 불필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도는 이혼 숙려제도였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양육비 사전처분이었다. 그런데 이혼 제도에 대해 이혼한 그룹은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필요비율이 낮았다. 이혼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설문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불필요 비율이 높았던 이혼 숙려제도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 상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 자녀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했을 때 그들의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2) 이혼 소송 경험을 통해 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권침해**

재판상 이혼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혼이 결정되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고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항소와 상고까지 거치게 되면 최소 3년 또는 4년 이상 소요된다. 재판 상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1> 재판 상 이혼 소송 절차<sup>11)</sup>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전치주의란 분쟁이 있을 때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판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곧바로 소송을 신청해도 가사조정을 먼저 받게 한다.<sup>12)</sup> 이혼 소송을 위해 소를 먼저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고 상대방은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소 제기 이후 개별 가사 사건에 대한 가사조사가 진행된다. 이때 가사조사관은 혼인 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조사 내용을 조정위원회에 회부 한다. 가사조사 이후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진술 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정한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필요하면 부부 상담 명령을 권고 하기도 한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합의되면 혼인 해소가 결정되고 이혼이 성립된다. 하지만 조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절차를 밟게 되고 쌍방의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변론 이후 판사가 최종판결을 내린다. 이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와 상고를 거쳐 최종판결을 받는다.<sup>13)</sup>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환경조사, 아동 상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양육비 사전처분 등을 거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이혼 소송 절차는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빠른 분리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예외 없이 거치는 과정으로 각각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당한다. 가사조사, 조정위원회, 재판 등에서 만나는 조사관, 조정위원, 판사 등에

11) “Easy 법률 : 이혼 소송 절차”, 해피앤드 이혼 story 블로그, 2016.03.03. 2021.06.05 검색 <https://bit.ly/3g39E1V>

12) 이철수, 「사회복지학 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2021.06.05. 검색, <https://bit.ly/3gFw3E7>

13) “재판상 이혼의 절차”,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21.06.05. 검색, <https://bit.ly/3yPCmvO>

의해 2차 피해를 보기도 하고, 가해자와 대면하기도 하며, 심지어 대면한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본회는 각각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어떤 인권침해를 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혼 소송 경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취합,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FGI를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가사 조사와 조정위원회에서 어려움 : 폭력을 ‘사랑’이라 말하는 조사관과 조정위원

가사조사는 협의이혼 시에는 하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거치는 과정이다. 가사조사관이 라는 법원 공무원이 혼인 생활, 파탄과정, 재산형성, 자녀들의 양육환경, 양육자로 지정되기 적절한지 등 모든 부분을 조사하고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있어서 증거로 활용하도록 한다. 가사조사관은 전문조사관도 있고, 법원의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2~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다툼이 많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다 보니 기간도 길고 조사를 받아야 할 사건이 밀려서, 2~3개월은 기본이고 길게는 6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는 상대 배우자가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조사받고, 변호사를 비롯해 신뢰관계자도 동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sup>14)</sup>

조정위원회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매년 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한다. 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조정이혼을 신청한 이혼 사건과 이혼 소송 신청 시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이혼 사건을 다룬다. 조정위원은 가사조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가사조사관이 조사한 보고서를 토대로 조정을 한다.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조정 또는 재판으로 넘긴다. 그리고 조정기일에 반드시 이혼 당사자를 참석하게 하고 있는데 이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과 어쩔 수 없이 대면하게 된다.

먼저 가사조사와 조정위원회에서 이혼 소송 경험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혼 소송 경험자들은 가사조사 시 가장 어려운 점은 ‘가사조사 기간이 길어 이혼 소송이 길어짐’이 38.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상대 배우자와 대면조사 강요’가 37.2%, ‘가사조사관의 편파적인 태도나 편견’ 31.9% 순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14) 조인섭 “[조 변호사에게 듣는 가족법] 이혼 소송에서 가사조사와 조정절차에 대하여”, 대한변협신문, 2017.01.16. 2021.06.05. 검색 <https://bit.ly/3xye3RI>

<표 59> 가사 조사 시 어려움

항목	명수	비율
가사조사관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말과 태도	11	11.7%
가사조사관의 성차별적인 말이나 태도	8	8.5%
<b>가사조사관의 편파적인 태도나 편견</b>	<b>30</b>	<b>31.9%</b>
가사조사관이 조사대상자 본인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말과 태도	19	20.2%
<b>가사조사 시 상대 배우자와 대면조사 강요</b>	<b>35</b>	<b>37.2%</b>
가사조사 시 상대 배우자와 화해 강요	21	22.3%
가사조사 시 일정조정의 어려움	20	21.3%
<b>가사조사 기간이 길어 이혼 소송이 길어짐</b>	<b>36</b>	<b>38.3%</b>
없음	12	12.8%
기타	4	4.3%

가사조사 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고 길면 6개월까지도 간다. 가사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혼 소송 기간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혼 소송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벗어나고 싶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장과도 같다. 이뿐 만 아니라 가사조사는 상대 배우자와 같이 조사를 받는데 이런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해야 한다. 물론 가정폭력일 경우 가사조사 시 분리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조사 전에 의견서나 서면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리조사를 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사조사관이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고 소송 당사자를 설득하며 같이 조사받게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대면은 가정폭력에 대한 기억 때문에 폭력이 다시 재연되면서 온몸이 떨리는 공포의 시간이다. 그런데도 가사조사관은 가해자와 대면조사를 강요하고,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화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이 FGI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가사조사\_FGI 사례1]

FGI에 참여한 가정폭력 피해자 A 씨는 가사조사 때 가해자와 대면 조사를 강요를 받았고, 가사조사관의 편파적인 태도와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은 피해자 A 씨가 말한 가사 조사 당시 내용이다.

피해자 A :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몰고 갔냐면 제가 우울증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해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 중략 ..... 판사가 이 정말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는 지 없는지를 확인차 조사를 같이 받으면 .... 중략 ..... “그럼 따로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는 따로 만나면 되는데 왜 같이 만나야 하느냐? 나는 같이 만날 수 없다. 조사관님이 나만 보고 내가 정말 잘 사는지 보시면 되잖아요.” 전화 통화도 했었거든요. 근데 조사관이 하는 말이 “**그렇게 조사를 지금 받지 않으면 재판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일찍 재판을 끝내고 싶으면 같이 만나서 삼자대면을 해야 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못 한다.”고 “**나는 그 사람 보는 게 너무 무섭다.**”고

피해자 B : 이렇게 하면은 법원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태도가 불성실하다.

피해자 A : 그래요? 흠~ 나는 그래 가지고 “나는 전혀 그 사람이랑 못 만난다고 어떻게 조정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변호사한테 연락해야 하고 그럼 변호사가 또 어떻게 판사님한테 연락해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냥 나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 그 가정법원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상대방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 잡아채 가면 어떡해 1층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너무 무서운 거야. .... 중략.... 청원경찰 정도는 있을 줄 알았거든요..... 중략 ..... 그 사람 벌써 안에 들어가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여기 앉아있고 나 여기 앉으라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인제.. 끝까지 나는 이렇게 멀리 (저기 선생님이 앉아있는 저 자리에)

피해자 B : 아니 이 정도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 중략 .... **그 건너편에 있으면 거의 한 이 정도로 붙어 앉아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피해자 A :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래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만에 만난 거였으니까 **그니까 그 두려운 생각밖에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중략..... 자기는 “완전히 변했다”고 반성하고 있고 돌아오면 “니가 맥주를 좋아하니까 맥주를 집에 박스로 맨날 사다 놓겠다”..... 중략 .... “니가 맨날 술을 먹어도 그러니까” 나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야. “맨날 먹어도 내가 이해하고”... 중략 ..... “니가 원하는 대로 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중략 .... “이혼만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허~ 미쳤나... 그래서..

피해자 B : 그 조사는 변호사도 안되고 당사자들이 받아야 되더라구요. 어떤 변호인이 대신 받아줄 수 있는 조사가 아니죠.

피해자 A : 인제 ‘왜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받냐’ 물었더니 “두 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절대 이혼 못 한다.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 조서관이 “남편이 본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세요?” 하고 묻는 거야**

피해자 B : 거기서 거짓말 한 게 다 나온 거예요..... 중략 ..... 그 조서관이.... 중략 .... “어떻게 그런 것까지 거짓말을 하냐” 내가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런 거짓말도 할 수 있죠**” 이러는 거예요.

피해자 A : 저는 그래서 처음 재판할 때 나는 빨리 이혼만 해주면 위자료든 뭐든 하나도 안 받겠다.... 중략 ..... 그 정도로 나는 이혼 의사가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조서관이 “**이렇게 남편이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이혼을 하셔야 되겠어요?**”.... 중략.....(조서관이) 나보고 “**정말..사실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예요. 사랑은 받는 사람이 이걸 사랑이라고 느껴야 사랑인거지.... 중략 .....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냐고... 중략 .... “저 그러니까는 이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단니까.

피해자 A씨는 남편에게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고, 경찰신고도 여러 번 했으며 진단서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지만, 조서관은 가해자의 말만 믿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해자가 두렵고 무서워 같이 살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말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냐고 되물었다. 조서관이 한 말은 가정폭력의 특수성

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무지한 말이고, 피해자에게 상처와 분노를 일으키는 2차 피해이다. 가사조사관과 조정위원들이 가해자의 편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례뿐만 아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 가사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있다.

[가사조사\_사례2]

가해자는 목을 조르고 가구가 부서질 정도로 심하게 피해자를 구타하였으며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통제하였다.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때리지도 못하고 경찰에 끌려갔었으니 제대로 때리겠다.’며 폭력을 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아이들과 피신한 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가사조사관은 피해자에게 **“자존감이 너무 낮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 있는 거 아니냐?”, “왜 맞으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았냐?”**고 얘기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가사조사\_사례3]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쉼터로 피신한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사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피해자는 불면증과 불안함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조사관에게 전달하여 가사조사 횡수를 줄여주길 요청하였으며, 가해자와 함께하는 부부 가사조사 거부하고 분리조사를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은 폭력으로 가해자를 마주하는 것조차 무서워하는 내담자에게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해 본 적 있냐?’,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결혼할 생각을 하였냐?’** 등의 질문을 해 내담자에게 가정폭력이 발생한 이유가 마치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지게 하였다. 어렵게 가사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는 그 이후 자책감에 우울해했고, 불안과 공포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가사조사관의 이러한 태도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다시 일어서려는 내담자의 의지를 꺾었고, 더 깊은 좌절 속으로 떨어뜨렸다.

가사조사관 외에도 조정위원들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FGI에서 피해자가 조정위원회에서 겪은 일이다.

피해자 B : 법원에서 대부분 그렇게 증거자료가 있어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증거자료가 있어서 서면에 써서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진짜 잘해요. 근데 거짓말을 ‘나는 폭력 한 사실이 없다. 저 여자가 집을 나갔는데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보고 싶었다. 이러는 거예요. 첫날. 근데 법원에서 **“사실이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증거를 다 냈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 하는데”....** 중략 .....**“남자가 가장 쉽게 유책 사유로 될 만 한 게 가정폭력 아니냐? 허위로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대방 쪽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처음에 심문기일 열리고 그거를 조사하라고 상담, 화해권고조사랑 조정위원들이 해요. 그거를 한 3번을 조정위원회와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진짜인지 그거를 계속 입증하는

거예요.... .중략 ..... 여기에서 좁은 곳에서 막~이렇게 하면은 저는 깜짝 놀라잖아요. 무서우니까 ‘저거 봐요’ 이랬다니깐요 이렇게 해도 그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당신이 자꾸 이 사람을 자극하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위 사례를 보면 가사조사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대면하는 자체만으로도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대면하지 않게 분리조사를 요청했지만, 가사조사관은 그러면 소송이 길어진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빨리 이혼 과정을 끝내고 가해자에게 벗어나고 싶은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가해자와 같이 가사조사를 받으면 가해자의 변명과 거짓말을 계속 듣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 조사관과 조정위원의 편파적인 태도와 편견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신이 힘든 피해자들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 2) 부부 상담에서 어려움

**: 남편의 폭력이 이혼 사유는 되지만 부부 상담 10회를 명령한 법원**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신청 당사자에게 전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 시에 판사가 부부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로 한정하지만<sup>15)</sup> <이혼 소송 경험 조사>에서 부부 상담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 당사자가 원한 경우는 10.1%에 불과했고 소송 중 부부 상담 명령에 의해 하게 된 경우가 74.7%였다. 대부분 당사자가 원하기보다 판사 또는 조정위원 등에 의해 부부 상담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0> 부부상담을 하게 된 이유**

문항	응답수	응답비율
내가 원해서	8	10.1%
상대 배우자가 원해서	10	12.7%
소송 중에 부부 상담명령을 받아서	59	74.7%
기타	2	2.5%

가정폭력의 경우 부부 상담 명령을 거부할 수 있지만,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판사가 원하는 부부 상담을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래 표는 부부 상담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 한 것인데 41%가 ‘부부 상담 명령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37.7%는 ‘부부 상담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을 몰라서’ 받았다고 했고, ‘거부하면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것 같아서’ 받았다고 한 사람도 32.8%였다.

15) 서울가정법원 「이혼을 고민 중이신가요?」 협의이혼 안내 팸플릿

<표 61> 부부 상담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중복응답)

문항	응답수	응답비율
부부 상담명령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25	41.0%
부부 상담명령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을 몰라서	23	37.7%
거부하면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것 같아서	20	32.8%
부부 상담을 받으면 상대 배우자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10	16.4%
기타	1	1.6%

이렇듯 현실적으로 부부 상담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부부 상담을 거부했을 때 법원은 부부 상담 거부를 잘 받아주지도 않는다. 이는 다음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부부상담\_사례1]

결혼 40년간 정서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폭력 피해로 고통받던 피해자는 쉼터에 입소한 후 자녀들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부부 상담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으나 가해자인 남편이 피해자와 ‘(잘) 살아보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가사조사관은 부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였다. 판사 또한 부부 상담을 받도록 조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조사관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부부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설득·강요하여, 피해자는 본인 진술서와 변호인의 진술서, 자녀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법원은 부부 상담 진행 입장을 계속 고수하였다.

[부부상담\_사례2]

10여 년간 가정폭력을 겪은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부부 상담 결정이 내려져 6차에 걸쳐 상담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고자 변호사를 통해 상담 일시와 장소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상담위원이 이를 불쾌하게 여겨 내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가해자의 폭력이 아닌 피해자의 외로움 때문일 것’이라거나, ‘가해자의 폭행은 피해자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탓하고 피해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며 2차 피해를 당했다. 심지어 ‘내가 당신의 서류를 작성할 때 아이들을 방임했다고 적으면 어떻게 되겠냐?’, ‘판사가 개인 상담, 심리검사, 제3자 소견서보다 자신의 소견서를 더 신뢰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압박하기까지 하였다.

[부부상담\_사례3]

30여 년간 남편의 가정폭력, 폭언과 협박, 외도 등을 참고 살아온 내담자가 이혼소송을 신청하였다. 판사는 남편의 폭력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면서도 부부 상담을 10회 진행하도록 하였다. 가해자(남편)가 가사조사관에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울면서 과거 사진을 가져와 보여주었더니 가사조사관이 “ 좋게 지내기도 하셨네요. 다시 생각해보시고 잘살아 보지 그래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부상담\_사례4]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사 조사관에게 부부 상담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녀는 남편이 평생 거짓말을 하고 살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목을 조르고 자식들 앞

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도망가서 살자’고까지 했고 결혼한 아이들도 아버지와 이혼하라고 한다고 조사관에게 말했지만 조사관은 ‘남편이 살아보겠다고 하고, 남편을 만나서 직접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하면서 부부 상담을 강요하였다.

사례를 보면 가사조사관, 조정위원, 판사 등은 가정폭력이 있지만, 가해자의 “잘살아 보겠다.”는 말 한마디에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부 상담을 강요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부부 상담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가사 조사에서 언급했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지난 폭력의 기억이 떠오르고 공포심을 느낀다. 그런데 가정법원 관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이해 없이 가해자 입장에서 부부 상담을 강요하고 있다.

아래 <표 62>는 부부 상담 과정 중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54.2%가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듣는 것’이라고 했고, 33.3%가 ‘상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자체’라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부 상담으로 인해 가해자를 다시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거짓말과 피해자를 탓하는 말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표 62> 부부 상담 과정 중 어려움(중복응답)**

문항	응답수	응답비율
상담자의 가부장적인 말과 태도	3	12.5%
상담자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태도	5	20.8%
상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자체	8	33.3%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 또는 비난을 듣는 것	13	54.2%
상대 배우자와 화해 강요	6	25.0%
없음	2	8.3%
기타	1	4.2%

부부 상담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현실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모 지방법원 지원에서 가사조사를 받으러 온 가해자가 양말에 칼을 숨기고 가사조사를 받으러 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sup>16)</sup>이 있었다. 2013년에는 부부 상담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사건까지 있었다.<sup>17)</sup> 이 사건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부부 상담을 비롯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게 하는 가사조사, 조정위원회 등 이혼 소송 절차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또한, 부부 상담은 보통 6회에서 10회까지 장기간 진행되는데 이 경우 상담회기 만큼 소송 기간이 연장된다. 그렇게 되면 하루빨리 피신 생활을 끝내고 사회로 복귀하길 원하는 피해자들의 자립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지난 수년간 정부 차원에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부 상담 및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정책을<sup>18)</sup> 발표하였으나 법 개정

16) 한국여성의전화, 「2019년 국정감사 질의요청서」

17) "이혼소송 중 살해당해...법원의 '부부 상담' 권유 때문?", KBS NEWS (2013. 5. 24. 8:47).

기사링크: <http://mn.kbs.co.kr/news/view.do?ncd=2663995>

및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 3) 자녀면접 교섭 사전 처분

：가정폭력 가해자와 자녀와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라는 법원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을 내리기 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유지하는 일정한 처분을 말한다. 이혼 소송 중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 양육자가 자녀면접 및 교섭을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이 있고,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사전처분이 있다. 두 제도 모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지만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은 가정폭력 피해 자녀들에게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제한하려 한다.

<이혼 소송 경험 조사>에서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받은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4.7%였다. 그리고 사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자녀면접교섭을 제한하려 한 응답은 39.7%였다.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제한하려고 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표 63> 사전자녀면접교섭을 제한하고자 한 이유(중복응답)

항목	응답수	응답비율
아이들이 원치 않아서	8	27.6%
아이들을 다시 돌려주지 않을까 봐	13	44.8%
상대 배우자가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을 것 같아서	5	17.2%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할까 봐	10	34.5%
나에게 폭력을 행사할까 봐	6	20.7%
나와 아이들의 위치가 상대 배우자에게 알려질 것 같아서	11	37.9%
만나기 싫은 상대 배우자를 만나야 해서	15	51.7%
기타	1	3.4%

<표 63>을 보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제한하려 한 가장 큰 이유는 51.7%로 상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었다. 그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로 44.8%였고, ‘나와 자녀 위치가 상대 배우자에게 알려질 것 같아서’가 37.9%,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할까 봐’가 34.5%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쉼터에 있는 피해자는 쉼터 위치 노출 위험 때문에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제한을 신청하기도 한다.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면 자녀를 통해 쉼터 위치가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제한은 쉼터 입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은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되고 무조건 아이와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결국 쉼터를 퇴소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느끼는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의 어려움에 대해 FGI와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18)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2019).

[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_FGI사례]

피해자 B : 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법원에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에서(가해자) 아이면접교섭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이 와중에 애는 무슨 면접교섭을 하라는 거냐” (조정위원이) “**아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정폭력피해자인데 난 개가 우리 동네 오는 것도 너무 싫은데 어떻게 개랑 1박 2일을 가냐 내가 지금 왜 이혼 소장을 냈는지 모르냐 소장은 보셨냐”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아이들 못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점 인 거예요.** 저는 이혼소송을 하고 싶었던 거는 아이와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해서 였거든요. 근데 아이라는 약점을 (말)하니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상대방이 나한테 흥기까지 들었었는데 내가 그럼 개랑 1박 2일 가서 흥기 맞으면 법원에서 책임 저주실 거예요. 저희 아이 책임 저주실 거예요**” 했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조사 안 하고 그런 것도 파악 못 하고 지금 저한테 1박 2일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 사촌 언니도 이혼 과정에서 법원에서 1박2일로 갔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1박 2일을 거기는 간 거예요. 갔는데 남자가 저녁에 이제 성폭행하려고 했던 거죠.** 강간으로 근데 여자가 (저항을)이렇게 하니깐 그냥 “이혼하면 다른 애들은 다를 것 같아? 다 똑같아 너 이혼해도 다른 애들이 다 너를 이렇게 \*\*으려고 하는 거 다 똑같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_사례1]

가정폭력 피해여성 A 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재판 이혼을 거쳐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녀면접교섭권을 요구하여 교섭권이 주어졌다. 그런데 아버지의 폭력 상황들을 알고 있는 자녀들은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권으로 인해 만남을 가져야 했다. 매번 면접교섭이 있을 때마다 가해자는 자녀들에게 엄마 욕을 한다거나 이혼의 책임을 엄마에게 전가해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면접교섭 날 가해자 집에 가면 가해자는 외출하는 등 온종일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만남을 다녀오고 나면 잠을 자다 오줌을 싸는 등 심리적 불안감이 극도로 커져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심리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다.

[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_사례2]

가정폭력으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B 씨는 판사에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했으나 **판사는 무조건 면접교섭이 법이라며,** 판사의 결정으로 자녀면접교섭이 결정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뿐 아니라 자녀까지 폭력을 행사하였고, 자녀는 쉼터 입소 후 놀이 치료로 심신이 안정되어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자녀면접교섭으로 아버지를 만난 후 야뇨 증상이 잦아졌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박지르고 폭언하는 것을 자녀가 보고 불안해했다. 그리고 가해자는 자녀에게 쉼터의 위치와 어린이집 이름을 물어보는 등 비공개시설인 쉼터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_사례3]

가정폭력 피해자이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강압적인 태도로 무조건 아이를 만나게 해 줘야 한다고 강요하여 돌 지난 아이를 만나게 했는데 가해자가 아이를 탈취하여 데리고 갔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으로 인해 가해자 얼굴을 보는 순간 숨도 안 쉬어짐에도 불구하고 참으라고 하고, 면접교섭 중 아이가 뒤집어지게 울어도 만남을 강요하였다. 현재 5세인 피해자녀는 납치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법원은 자녀의 권리보다 상대 가해자의 권리 측면만 강조하며 자녀면접교섭을 강요하였다.

위 사례를 보면 이혼 소송 중에 자녀면접교섭이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알 수 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진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사례에서 보면 법원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남을 강요한다. 법원의 가정폭력 피해 자녀에 대한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두는 자녀면접교섭의 기본 취지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정폭력 피해 자녀는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가정폭력 피해 혐의로 피신하여 겨우 정서적 안정을 찾은 자녀에게 다시 가해자를 만나게 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며 법원은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려고 한다. 또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신청해 피해자 주소지 등의 정보를 알아낸다. 이 때문에 비공개시설인 쉼터에 피신해 있는 피해자가 쉼터를 퇴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를 탈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력이 재발하기도 한다. 법원이 자녀면접교섭권을 강요하는 것은 실상 피해자녀의 권리보다 ‘가해자인 아버지’의 권리를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는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는 정상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정폭력 가해자보다 ‘아버지’에 더 방점을 두게 만들고, 이를 이유로 피해 자녀와 만남을 강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녀면접교섭권에 대한 인권침해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보다 가부장적인 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해자인 ‘아버지 권리’를 더 우선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4)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에서 어려움  
: 죄책감을 유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려면 자녀양육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녀양육안내란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보호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혼 이후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교육이다.<sup>19)</sup> 자녀양육안내는 협의이혼 당사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조정 또는 재판이혼은 재판장이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양육 안내는 2007년 민법개정에 의해 이혼하고자 하

19)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정 2012. 9. 19. [재판예규 제1400호, 시행 2012. 1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는 당사자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2012년 대법원예규 지침에 이혼 안내에 자녀양육안내가 포함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자녀양육안내교육은 자녀양육안내문을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재판 이혼의 경우 다음 변론기일 또는 가사조사 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은 후 참석확인서를 담당재판부 또는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sup>20)</sup>

자녀양육안내에 대해 이혼 소송 경험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사람 중 교육내용에 만족하는 사람은 53.3%였고, 46.7%는 불만족을 표시했다. 불만족의 이유는 '교육내용이 현재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아서'가 38.6%로 가장 많았고, "이혼을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죄책감을 유발해서"가 32.9%, '이혼 자녀 양육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27.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형식적인 교육이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64> 자녀양육안내가 불만족인 이유**

문항	응답비율
이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27.1%
이혼을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죄책감을 유발해서	32.9%
교육내용이 현재 내 상황과 맞지 않아서	38.6%
기타	1.4%

자녀양육안내는 이혼 시 자녀 권리 확보 차원에서 만들어진 절차로 그 취지는 의미가 있으나 대부분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되고,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매주 1회 가정법원에서 교육하는 시간에 맞춰 참석하고 참석 이후 확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되는 매우 형식적인 절차다.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이 과정은 매우 두렵고 긴장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교육 장소와 시간을 정해두고 모든 이혼 소송 당사자들이 다 같이 듣게 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교육에서 가해자와 언제 마주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장에 가는 것부터 교육을 듣는 동안 긴장을 하며 교육이 참여한다. 그리고 교육내용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맞지 않는 교육이고, 심지어 죄책감까지 유발해 교육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비 양육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안내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과 가정폭력 피해 상황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

### 5) 무료법률구조에서 어려움

#### : 이혼 소송 준비 단계부터 주눅 들고 지치게 만드는 무료법률구조

이혼 소송은 조정위원회와 가사조사, 혼인 파탄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위자료 등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할 일들이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입증자료를 무료법률구

20) 최영길, “협의이혼 하려면 '자녀양육안내' 들어야”, 법률신문, 2012.10.31. 2021.06.05. 검색 <https://bit.ly/3cv7Qho>

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쉼터 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구조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혼 소송 경험 조사>에서 무료법률구조변호사에 의한 어려움은 없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이혼 소송 경험자들의 법률대리인 선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65.2%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34.8%는 선임하지 않았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57.3%였고, ‘변호사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가 33%였다. 기타 의견으로 변호사 비용이 없어 혼자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 했으나 이혼에 관한 정보 찾기가 쉽지 않아 너무 힘들었다는 참여자의 호소도 있었다.

소송대리인은 누구였는지 알아보았는데 59.1%가 사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37.8%가 무료법률구조변호사를, 3.6%가 법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무료법률구조를 이용한 경험은 23.2%였고, 76.8%가 이용한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무료법률구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물었다.

**<표 65> 무료법률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항목	응답수	응답비율
정보를 몰라서	71	37.0%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30	15.6%
수행할 소송 수가 많아서	14	7.3%
성심껏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68	35.4%
기타	9	4.7%

응답자의 37%는 ‘정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고 했고, 그다음 이유로 ‘성심껏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가 35.4%였고, 15.6%가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서’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경우에는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자들만 지원<sup>21)</sup>을 받을 수 있고,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도 소득 기준에 의해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다.

**<표 66> 무료법률구조 이용 시 어려운 점(중복응답)**

문항	합계	합계비율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말과 태도	6	5.8%
성차별적인 말과 태도	4	3.8%
소송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25	24.0%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음	22	21.2%
나의 의견과 다르게 합의를 중용	9	8.7%
변호사와 상담시간이 부족함	34	32.7%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거나 연락이 잘 안 됨	29	27.9%
없음	44	42.3%
기타	6	5.8%

무료법률구조를 이용했을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물었는데 조사대상자들의 42.3%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32.7%는 ‘변호사와 상담 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

21)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2021.06.05. 접속 <https://bit.ly/2SQccbJ>

고, 27.9%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거나 연락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아래와 같이 FGI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피해자 A : 근데 무료 법률하는게 저는 변론기일을 몇 번 지났지만, 변호사한테 이런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피해자 B :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무료법률을 하려고 했는데 의욕이 없으시더라고요.....중략....그래서 아 여기서 했다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피해자 A : 나는 **딱 그 조사 받는 거 때문에 변호사랑 한 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이거 제가 받으러 가야 되요? 변호사님? 그랬더니 별거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피해자 C : 공황이 오갈 땐데 내가 막 차분하고 맨날 킬킬대고 웃고 있으니까...중략.... 이제 막 아는 체 한 거지. 그냥 들은 말 그냥 막 지껄었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당할 사람은 아니시네요”** 뭐 이런 변호사가... 그 소송 계속 안 나가고 할 때 변론기일 이런 계속 안 나가다가 마지막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조정 2번 나갔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변호사가 어떤 걸 해 주지 않아요....중략.....조정할 때 조사를 받았어요. 나왔는데 나와서 변호사가 하는 말이 “괜히 자극하지 말라고 자꾸 나를 설득하더라고요.”**

피해자 A : 우리는 일단 쉼터에 갑자기 집을 나온 사람이니까 이제 돈도 없고 하니까 무료법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무료법률을 받아주는 거는 내 집에 의료보험이 얼마 이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그 놈의 **의료보험이 뭔지 그것 때문에 거절당한다는 거....중략....서류 접수 자체도 할 수 없다는 거,....중략...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겨우 지금 돈 한 푼도 안가지고 나와 가지고 딸한테 80만원 빌려서 나왔는데 .....중략.....내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중략....의료보험이 얼마 있다고 잡혀 있다고 무료법률을 받을 수 없다고 난 분명히 쉼터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일단 서류가 빠꾸 된다는 거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피해자 D : 그거 같아요. 나는 엄청 급하고 나는 엄청 몸이 닳고 **나는 너무 너무 힘들고 그런데 접수하는 사람은 별로 감이 없어요.** 당연히 뭐 그냥 접수 뭐..그냥 접수하고 언제 뭐 뭐 필요하니까 뭐 뭐 해가지고 오세요. 그거니 별로 이 공감대가 없더라고요.

피해자 B : 그래서 막 서류 이름이 어렵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안 해줘요.

피해자 A : 서류 그런 것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사람을 몇 번씩 그 서류 접수 하나 하기 위해서 법원에 몇 번씩 3~4번씩 가야 된다는 거

피해자 B : **질문하면 뭐 이것도 몰라요?** 뭐..이런....중략.....기본적인 준비 자체부터 되게 주눅 들게 해요.

피해자 A : 맞아, 안그래도 우리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일단 가정폭력피해다 이래 이런 식으로 써서 가잖아요. 일단 **그 사람들이 시선부터가 다르잖아요.(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 여자 맞고 살았구나하는 그런 시선 일단 난 또 주눅이 들어 있는데 상대방은 또 나 얼굴을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런 식으로 접수를 받으니까 그게 너무 안그래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뭐 그런 기관에서까지 무시당하고 차별당한다는 거.

- 피해자 D : 그런 쪽에도 그런 담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는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 피해자 B : 그 법구공이 모든 소송을 다 해야 되잖아요.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뭐 양육비소송, 채권소송 뭐 이렇게 파트 별로 나뉘어져 있어야 하는데 혼자서 여러 가지 것을 하니까 공감이 전혀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 피해자 C :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힘들게 서류 끌어 모아가지고 가면은 뭘 변호사가 알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런 서류도 내셨어요?” “형사고발 했다고 입건된 게 있어요?” 막 이런 다 이제 끝나가는 판국에 막 이 서류 힘들게 가져온 서류를 안본 (안본거야) (안 봐) 또..뭘..이렇게 떨어뜨려 달라고, 떨어뜨려서 하겠다. 이것도 결국에는 또 설득당 해서 그냥 같이 앉았거든요. 하 그거 그 서류 내는 것도 몇번..오래 걸렸거든요..다시 내라고 해서 또 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힘들게 내서 됐어요. 그래서 따로 하기로 했는데 변호사가 “아우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얘기 전해야 되고 직접 전달이 안돼서 얘기가 또 와전 될 수도 있고 그냥 같이 하라는 식 같이 앉아서 하라” 그래서 그 날 처음 본거죠. 그렇게 바로 옆에서 앉아서 하는데...중략.....응..그냥..기운이 다 빠지고..또
- 피해자 A : 그러니까 우리 그 서류를 막 내잖아요. 나는 한 번은 또 변호사가 갑자기 나오래 저 쪽에서 뭐가 왔는데 갑자기 오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걱정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사진을 보내왔대 내 사진을 보내왔대 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저도 사진 거기 다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디요?” 하면서 찾는 거 있죠. (안 봤어) 한 번도 그러니까 증거자료를 하나도 ....안 보고..
- 피해자 D : 그게 이제 그게 있더라구요. 저도 이제 무료법률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갔다가 서류를 접수하고 뭐 한 게 예를 들어서 올해 했다 이제 말이었어요. 그 해를 넘어가면 변호사도 바뀌어요. 변호사도 바뀌고 (2월에 변호사 인사이드가 있다 라고하고) 그러면서 막 그게 막 딜레이가 되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그냥 엄청 그래서 저도 시작하기를 늦게 시작했어요. 해 놓기는 14년도에 접수를 해놨어도 그 해에 다 가가지고 변호사도 바뀌고 또 한참 지나고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위 사례에서 피해자 세 명은 무료법률구조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했고, 한 명은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했는데 무료법률구조 변호사의 성의 없는 태도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무료법률구조 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연락도 잘 안 되고, 잘 만나주지도 않고, 겨우 만나면 증거자료조차 보지 않고 빨리 이혼 소송을 끝내기 위해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변호사를 보며 분노하기도 하고 힘이 빠진다고도 했다.

무료법률구조의 문제점은 변호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고 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보통 2~3개월이고, 늦는 경우 6개월까지 가기도 한다. 신청접수부터 변호사와 연결까지 긴 시간이 걸리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고 돈을 빌려 사선 변호사를 수임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 피해자는 인사이드 때마다 변호사가 변경되어 총 3명의 변호사가 변경되었고, 마지막 판결에서 변호사가 변경되어 제대로 된 소통조차 못 한 경우가 있었다. 물론 변호사 한 사람이 맡은 사건이 많다 보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와 하루빨리 분리하고 자립을 해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혼 소송 준비 단계부터 긴 기다림은 피해자들을 지치

게 만든다. 이혼 소송 준비부터 끝까지 기다림의 연속이고, 길어진 이혼 소송에 지쳐 하루빨리 이혼을 끝내고 자립하고 싶어,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받고 싶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만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FGI에서 피해자 C가 그런 경우였다. 피해자 C는 빨리 이혼을 끝내고 싶어서 이혼만 하고, 양육권, 위자료 모두 포기하고 가해자와 이혼 조정에 합의하고 6개월 만에 소송을 끝냈다.

무료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A 씨 사례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고,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까지 가해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명의에 의한 소득이 잡혀도 실질적인 피해자의 재산이 아닌 경우가 많고 컴퓨터로 피신한 피해자들 대부분은 입고 있는 옷과 얼마의 현금만 가지고 컴퓨터로 오기 때문에 무료법률구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가정폭력피해자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문제가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이고, 이혼은 가정폭력에서 탈출하는 피해회복의 과정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범죄피해자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모두에게 이혼 소송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 6) 이혼 소송 판결 후의 어려움

**: 이혼 소송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닌 소송의 골레**

힘겨운 이혼 소송을 끝내고 최종 이혼 소송 판결문을 받았다고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대개 이혼과 함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와 자녀면접교섭, 재산 분할, 위자료에 대한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재판 과정이 끝나면 결정사항에 대한 판결문을 받는다. 그런데 <이혼 소송 경험 조사>에서 이혼 소송 이후 판결문에 적힌 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아래 <표 67>을 보면 ‘전혀 이행되지 않음’ 20.9%, 이행되지 않은 편임이 26.7%, 대체로 이행됨이 34.1%였고, 모두 이행됨이 18.2%였다.

**<표 67> 이혼 소송 종결 이후 판결 이행 여부**

문항	합계	합계비율
전혀 이행되지 않음	62	20.9%
이행되지 않은 편임	79	26.7%
대체로 이행됨	101	34.1%
모두 이행됨	54	18.2%

판결이 모두 이행된 것은 18.2%에 불과했고, 나머지 88%는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행되지 않은 판결은 양육비가 58.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위자료가 36.8%였고, 자녀면접교섭권이 29.8%, 재산 분할이 24.8%였다.

<표 68> 이행되지 않은 판결(중복응답)

문항	응답수	응답비율
자녀양육권	15	6.2%
자녀면접교섭	72	29.8%
양육비	141	58.3%
재산분할	60	24.8%
위자료	89	36.8%
기타	13	5.4%

이행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추가소송 진행 여부를 물었다. 결과는 73.6%가 그냥 포기했고, 26.4%가 추가소송을 하였다. 추가소송 중 62.6%가 양육비에 대한 소송이었고, 32.8%가 위자료, 28.1%가 재산 분할 소송이었다.

피해자 B : 저는 사실은 이혼하면 상황이 다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안주니까... 거기서 이행을 안 하면 가장 비싼 휴지를 산 거예요. 이거 한 장 적자고 내가 시간을 보내고 돈을.....

피해자 D : 저는 이렇게 쉽터에 들어왔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이혼만 하면 돈도 많지 않지만 돈이고 뭐고 아무 상관 없다. 나는 나 이혼만 얼른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겠냐.... 중략..... 그때 활동가 쌤이 그렇더라고 “선생님 우리가 뭘 해 가지고서 만약에 나가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벌어서 한 달 1년에 버는 게 얼마나 작은 줄 알아요? 단돈 천만 원이라도 가지고 나오는 게 선생님 나중에 돼서 좋다”고 그 말씀을 진짜 처음에는 그 말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진짜 난 이혼만 했으면 좋겠다고.... 중략.... 어떻게 해서 인제는 위자료 3천인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래도 또 그냥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그거를 아무튼 한꺼번에 줄 수가 없으니까 분할로다가 2번에 나눠서 준다고 하고 뭐..... 중략... 네, 판결문에 그래서 만약 거기서 날짜가 조금이라도 저거 딜레이되면 그거만큼 이자가... 중략.... 나도 사실은 반신반의 했어요. 이게 정말 들어올까... 근데 들어 왔더라구요.

피해자 B : 저 같은 경우는 그 뭐지... 혼인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재산분할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위자료가 혼인기간이 짧은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된 거 3천만원... 근데 그 값는 날까지 20%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한 8천만원 정도 됐구요. 양육비를 계속 못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총 해서 한 1억 2천얼마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감치재판으로 인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소송이라는 걸 해요... 중략.... 그러고 나서도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한 번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감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들어가요. 근데 최장이 30일이거든요. 보통은 한 10일 정도인가 나요. 근데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30일 정도 나오는 거 같고 정말 최악의 사례였거든요. 제 사례가..... 중략.... 그 자리에서 오늘 지급 못 하면 못 나가요.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30분 만에 4천5백만 원을 보냈더라구요. (어머, 어머, 어머)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게 양육비 미지급된 거는 1천만 원이고 나머지 이제 위자료로 8천만 원 된 거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중략....양육비 1천만 원은 위자료랑 같이 합산해서 이행명령 소송을 할려고 해요. 그 소송하고 나서도 또 보통 감치까지 가는데 2년정도 걸린대요.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서 하면 한 3년 걸리구요.... 중략..... 개인의 몫이니까..... 중략..... 12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아이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의 찌든.... 중략.... 평생 한부모들은 소송에 찌든 삶인 거예요.

비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감치명령 및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비 양육자에 대한 금융자산조사, 압류명령 신청, 추심 등 또 다시 법적 소송을 해야 하고 사례에서 보듯 모두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당사자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자료는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가 연 12%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 내 위자료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가해자들도 있다. 그리고 가해자 중 이혼에 대한 합의를 빨리해주는 대신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걸기도 한다. 가해자의 폭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자립하고 싶은 피해자들은 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포기하고 이혼에 합의하는 빠른 이혼을 선택한다. 이런 결정은 피해자의 자립을 어렵게 하고 가로막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따라서 양육비를 비롯해 이행되지 않는 이혼 판결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5.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지금까지 이혼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는 쉽게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왜 계속 폭력을 당하고 사느냐? 이혼하면 되지?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것처럼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혼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자립을 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하지만 이혼이 성립되기까지 보통 1년 이상 가해자와 싸워야 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도 판결이 이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소송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힘든 과정을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겪어야 할까? 이 같은 문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혼 소송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혼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혼 소송 경험 조사>에서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는 아래 <표 69>와 같다. <표 69>에서 매우 필요와 어느 정도 필요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았고, 이를 기준으로 응답자가 제시한 필요한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69>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매우 필요	어느 정도 필요	긍정 비율	어느 정도 불필요	매우 불필요
이혼 소송 절차 및 지원서비스 홍보	64.9%	24.0%	88.9	7.4%	3.7%
이혼 소송 기간 단축	69.9%	22.3%	92.2	6.4%	1.4%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소송에서 가사조사 제외	59.1%	33.4%	92.5	6.1%	1.4%
가정폭력 피해자의 부부 상담 명령 권고 제외	55.7%	28.7%	84.4	8.8%	6.8%
가정폭력 가해자의 청구에 의한 면접교섭 사전처분 권고 제외	59.8%	29.1%	88.9	6.8%	4.4%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소송 중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제외	52.4%	30.1%	81.5	11.1%	6.4%
판사, 가사조사관, 조정위원 등 법원 관계자들에게 성평등,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실시	66.9%	25.7%	92.6	5.1%	2.4%
무료법률구조변호사들에게 성평등,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실시	63.2%	27.4%	90.6	7.1%	2.4%
무료법률구조 변호사 인원확충	70.9%	21.6%	92.5	5.4%	2.0%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권 행사	80.4%	13.2%	93.6	5.7%	0.7%
가사조사관, 가사조정위원회 보고서 공개	55.4%	32.4%	87.8	9.1%	3.0%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90%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은 1.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권 행사'(93.6%), 2. '판사, 가사조사관, 조정위원 등 법원 관계자들에게 성평등,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실시'(92.6%) 3.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소송에서 가사조사 제외'(92.5%), 4. 무료법률구조 변호사 인원확충(92.5%), 5. '이혼 소송 기간 단축'(92.2%), 6. '무료법률구조변호사들에게 성평등,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실시'(90.6%)였다. 이외의 정책 또한 80% 넘는 비율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보기에 제시한 대부분의 정책이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가정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혼 소송과 관련한 인권침해 방지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판사, 가사조사관, 조정위원 등 법원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FGI 그룹에서 이혼 소송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말한 정책이 판사, 가사조사관, 조정위원 등 법원 관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 변화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들은 말했다. 여성폭력방지법 제18조 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법원에 속한 판사, 가사조사관, 조정위원, 상담위원 등 이혼 소송 및 가정보호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주기적으

로 실시하고, 가사조사, 재판 등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소송에서 가사조사 제외

재판상 이혼에서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이 혼인생활, 재산 형성, 자녀 양육환경, 혼인과탄경 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 재판에 증거로 활용한다. 그런데 가사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조사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등을 할 수 있지만 가사조사관은 소송이 길어진다고 설득, 회유, 협박하여 가해자와 함께 조사받게 만든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직접 대면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압박감을 주고, 가사조사관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다. 이로 인해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빨리 벗어나 새롭게 자립을 해야 하는 피해자는 우울, 불안, 수면장애, 대인기피 등 정신적 피해를 당한다. 가해자와 하루빨리 분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립을 해야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사조사 과정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가사조사 과정이 재판상 이혼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소송의 경우 증거자료를 통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고, 피해자와 직접 대면조사 없이 조사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혼 소송에서 가사조사를 제외하고 직접 재판을 통해 증거를 검토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부 상담 명령 권고 제외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부부 상담을 권고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걱정되어 별다른 신변보호나 안전장치 없이 부부 상담을 받는다. 부부 상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위원에게 가부장적인 말을 듣기도 하고,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상담에서 가해자의 변명과 거짓말을 계속 들어야 하고, 심한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기도 한다.<sup>22)</sup> 뿐만 아니라 부부 상담 때문에 이혼 소송 기간이 2~3개월 정도 더 연장되기도 해 피신 생활을 끝내고 사회로 복귀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자립에 가사조사와 함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과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소송에서 부부 상담 명령은 제외되어야 한다.

## 4) 가정폭력 가해자의 청구에 의한 면접교섭 사전처분 권고 제외

자녀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소송에서 자녀면접교섭권은 그 목적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가해자의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가해자와 만남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고, 두려움과 공포이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22) 이혼 소송 경험에 관한 2차 조사는 현재 가정폭력 센터에 입소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 중 부부 상담을 받은 참여자 7명 중 3명이 부부 상담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으로 '정서적 불안이 가중되었다'고 응답했다

끈질기게 스토킹하는 경우 자녀면접교섭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변이 노출되기도 하고 피해자와 피해 자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법원이 진정 자녀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가해자의 ‘아버지 권리’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 자녀에 대한 권리를 더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소송에서 자녀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제외해야 한다.

## 5) 이혼 소송 기간 단축

우리나라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가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곧바로 소송을 신청할 경우 가사조정부터 받게 한다. 즉 재판상 이혼에서 재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닌 조정 단계를 거쳐 거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하게 된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합의 이혼이 되지 않을 만큼 서로 간에 갈등이 크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인데, 다시 조정 과정을 거치라는 것은 그만큼 소송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재판을 통해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첫 단계이자 관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빠른 자립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르게 관계를 종결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소송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 중 단기쉼터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있을 수 있다. 쉼터로 피신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쉼터를 퇴소하기 전에 이혼이 이뤄지길 원한다. 1년 동안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고, 이혼과 함께 자립 준비를 한 후에 퇴소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례에서 봤듯이 이혼 소송은 보통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쉼터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들 대부분은 소송 도중에 퇴소한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 등이 필요하지만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자립이 힘들어진다. 무엇보다 이혼이 안 되면 한부모 가족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힘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이혼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권 행사

양육비는 가정폭력 피해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사례에서 보았듯이 가장 많이 이행되지 않는 판결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 양육자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를 공개하는 비공식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양육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 양육자에게 감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강제 집행하여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양육자 개인이 소송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 온전히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갈수록 이혼 가정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양육비에 대한 구상권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7) 무료법률구조 변호사 인원 확충 및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례에서 보았듯이 변호사와 연락도, 상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무료법률구조변호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노조를 만들고 전면 파업을 결의한 일이 있었다. 당시 변호사노조는 변호사 1인당 연평균 800건 이상 사건처리를 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커 인원확충과 처리사건 수 제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였다.<sup>23)</sup> 기사를 보면 무료법률구조변호사가 피해자와 상담을 자주 못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무료법률구조공단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따라서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구조 변호사의 인원 확충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를 비롯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무료법률구조 변호사에 대한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변호사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변호사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변호사에게 가정폭력을 의심받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도 판사와 가사조사관 조정위원 등과 마찬가지로 2차 피해 예방교육과 함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 8)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 해체와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 수립

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었다. 먼저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자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녀는 되도록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와 ‘한부모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에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응답 특성은 혼인유무, 연령대, 혼인 형태, 소득별 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항목에 비해 동의 비율이 높았다. 더욱이 성역할 태도에서 가장 평등한 의식을 가진 20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는 현재 이혼 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자녀와 연관된 제도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별개로 자녀와 관련된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녀양육안내교육도 형식적이고, 교육내용이 자신과 맞지 않지만, 제도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세 번째로 이혼에 필요한 정책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 제외, 자녀양육안내교육 제외에 대한 불필요 답변이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자녀면접교섭의 문제는 자녀 복리를 위해 자녀면접교섭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아버지 권리’를 먼저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자녀는 가해자인 아버지를 만나는 것 자체가 공포이고 스트레스 상황이라 만나는 것을 제한해야 함에도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몇 가지 특징을 봤을 때, 아직 우리 사회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현실에서 폭넓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갈수록 증가

23) 최영열, “‘인력 충원해달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오늘부터 총파업” 경성매일신문, 2020. 02.02, 2021. 06. 05 검색 <https://bit.ly/2TuqLII>

하고, 비혼 가구, 동거 가구,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인식은 가족 변화에 맞춰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상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한국 이혼 정책과 제도에 그대로 녹아있으며, 이혼 소송을 경험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그 과정 안에서 각종 인권침해를 당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이혼 정책은 제도 개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가 같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는 인식 전환과 이를 위한 가족 정책 수립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 시작부터 힘겨운 이혼

---

이루리 |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

## 시작부터 힘겨운 이혼

이루리<sup>24)</sup>

2년도 채 안 되었던 나의 결혼 생활은 갈수록 폭력의 정도가 점점 심각해져 갔고 가족을 유지하려던 단꿈은 가정폭력의 흔적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짧은 결혼생활 동안 있었던 가정폭력을 시댁의 식구들은 알았지만 친정에 알리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에 혼자 가슴 앓이를 하며 혼자 감당해야 하는 개인의 문제였다.

2012년 3월 바람이 매서웠던 그 날, 꼭 참고 버텼던 폭력은 노력해도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너는 왜 멧집이 없냐?” 탓하듯 이야기를 하고 아파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즐겼다. 두려워하는 아이와 나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나아지겠지... 달라지겠지.’하며 아이 때문에 참아보려 했지만 더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참는 것은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님을 깨달았다. 아빠가 없어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란 생각에 가해자가 잠시 집을 나간 틈을 타서 18개월 된 아이만 안고 맨몸으로 도망쳐 나왔다.

친정에 와서도 어디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을 했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라 관련 내용에 대해 검색을 많이 해보았다. 가정폭력으로 내 자신이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돌볼 틈도 없이 상대방의 협박과 회유를 대응해야 했다.

친정으로 도피하고 한 달쯤 가해자인 그가 분노에 차 친정집으로 찾아왔다. 아이와 혼자 있던 나는 ‘답을 넘어오면 어떡하지?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오만가지 생각이 들어 불안했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 후 재빠르게 112에 신고를 하였다.

“도와주세요. 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이와 저만 둘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순간에도 아찔한 생각이 계속 들어 도움을 청하던 나의 목소리는 더욱 급해졌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 되었다.

관할 파출소의 경찰은 빨리 왔지만 고성을 지르며 욕을 내뱉는 가해자에게 어떤 제재도 없었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데려 가달라고 부탁도 했지만 ‘현장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방법이 없다. 설득하여 돌려보내겠다.’ 했다. 또 불안해하는 나에게 “자극하지 말라 원하는 것을 들어줘라.” 하고 다그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안한 상황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고 나니 더욱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실신 직전에 어떤 것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24)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그래도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집안에서 네이버에 “가정폭력”을 검색하여 관련 검색어에 뜨는 기관에 전화를 하였다. 가정폭력 때문에 그러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물었다.

하지만 어느 한 곳도 도와주지 않았고 가정법원은 법원, 법원은 경찰서, 경찰서는 가정법원에 문의하라고 했다. 지금 되새겨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지만 그만큼 당시 상황이 절박했고 개인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생각한다.

관련 없는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룰 뿐 누구 하나 시원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 폭력으로부터 도와줄 국가기관이 없다는 사실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어릴 적 도움을 청하는 곳은 경찰서였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불안하게 지켜봐야 하는 경험을 한 순간 모든 것이 좌절되고 원망스러웠다. 그러다 ‘여성의전화’라는 곳이 검색으로 보였고 혼비백산의 상태에서 전화를 하였다. 당시엔 불안함이 고조된 상태였다. 전화를 받으신 분은 침착하게 “선생님 님이 어디세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요? 상대방들이 대부분은 그러하니 좀 피해 있어요, 곧 출동할게요.”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현장에 오신 선생님들은 상황을 판단하시고 컴퓨터 아이와 나를 데려다주었다.

그렇게 컴퓨터에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였다. 당시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협의보다는 소송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첫 기일, 얼음보다 차가웠던 나의 상태와 달리 상대방은 따뜻한 봄 날씨에 놀이동산 가는 옷차림에 반가운 표정으로 출석하였다. 집을 나와 가해자와의 첫 대면이었던 준비기일은 너무나 불안했고 ‘얼굴을 다시 본 이후, 어떤 보복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말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방은 저를 수시로 쳐다보며 여유로운 웃음을 보였다. 그가 그럴수록 ‘이혼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아이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하는 불안감에 시선을 피해야 했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원을 참석한 태도는 시작부터 너무나 달랐다.

## 0.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공개(소송에 기본자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나와 친정에서 거주를 해야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컴퓨터에 나온 사실을 알게 되면 또다시 찾아올까 싶어 주민 센터에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열람 제한을 신청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협박을 하던 그가 소송 중 마음만 먹으면 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언제 발생 될지 모를 폭력상황을 막고 싶었다. 분명 제도가 있으니 컴퓨터에서 알려준 것일 텐데도 주민 센터 담당자는 한참 책을 뒤지며 ‘이런 것(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이 있냐?’ 물었다.

얼굴이 붉어지는 질문들이 계속되었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로 소통이 어려웠다. 그러다 컴퓨터 선생님께 전화해 연결한 후에야 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서로의 대한 정보를 아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주소지는 가해자인 상대방 또한 보호자 권한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피해자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이혼 소송 중 가해자는 아주 쉽게 피해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정보보호는

어려운 현실이었다.

## 1.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 범죄로 바라보지 않은 인식(민사/형사)

첫 재판에서 판사님이 상대방을 보면서 “여기 왜 앉아 있는 거 같으세요?”라고 질문을 하였고 상대방은 가정폭력을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내가 시부모를 모시기 싫어 집을 나갔다면 아이를 안 보여주기 위해 컴퓨터에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였다. 가정폭력의 정도는 나만 알뿐 그 자리에 있던 판사도, 변호사도 그 누구도 피해자인 나만큼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했다. 그의 폭력이 심각하다고 주장을 해도 나의 변호사조차 젊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 그들에게는 별일이 아닐지 몰라도 나는 세상에서 끔찍한 시간이었기에 처벌을 꼭 받게 하고 싶었다. 이혼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잘못을 인정하게끔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 길로 나는 경찰서를 갔고 이혼소송과 별도로 형사소송을 혼자 준비하여 고소장을 넣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반대를 했지만 나는 가해자의 사과와 처벌을 꼭 받게 하고 싶어 이혼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병행하기로 하였다.

형사소송 시 경찰 조사는 여러 번 이뤄졌다. 나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가해자는 맨입으로 거짓 주장을 펼쳐나가 수사의 혼란을 주었다.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과정도 폭력을 당하는 것만큼 힘들었다. 가정폭력을 겪은 부부가 다투다가 있을 수 있는 일로만 여겼고 내가 상대방을 자극하니 상대방이 화김에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진단서, 각서, 반성문 등 온갖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가해자의 한마디면 나의 주장은 다시 원점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선생님, 맞았다는 동영상도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었다. “잠깐만 나 핸드폰 카메라 켜고’ 하며 폭력을 맞이하는 피해자가 있을까요?” 하는 반문에 수사관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선생님이 하는 것인지 모르니 판단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답을 했다.

여러 차례의 진단서가 있고 진단서 안에는 정확을 예측해볼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도 수사관은 피해자인 나보다 가해자인 그의 입장에 서서 ‘좀 예민한 거 아니야?’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의심을 하는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기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라고 물었고 나는 하겠다고 했다. 상대방은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다는 수사관의 질문에 더는 수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회피했다. 그제서야 검찰로 송치되었고 결국에는 폭행도 아닌 상해로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을 받았다.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에 대한 시시비비를 오랜 시간 따졌다. 가정폭력은 젊은 부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의 거짓말은 사랑했으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냐고 포장이 되어 아이가 있으니 ‘살아보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조정을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할 경우 “이렇게 하시면 아이 친권 못 갖고 와요. 아이를 위해 생각하세요.”라는 회유식의 답변이 왔다. 끔찍한 가정폭력 경험에 대해 피토하는 심정으로 주장을 했고 형사소송이 판결 난 후에야 폭력의 정도를 이해한 듯 이혼소송결정에 참고 되어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났다.

## 2. 피해자와 가해자를 손만 뺨으면 당을 밀폐된 공간 안에서 함께 화해권고조사

가정법원의 첫 대면조사, 화해권고 그때는 그 용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법원에서 그 날짜에 오라고 하니 갔다. 법원에서 대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발제문에 ‘가사 조사 시 분리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조사 전 의견서나 서면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나 그 누구도 안내한 사실이 없었다. 나의 경우 첫 조사 때 밀폐된 공간에서 그와 손만 뺨으면 되는 거리에 나란히 앉았고, 건너편 조사관은 모니터 뒤에 가려진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양쪽 다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고 각자의 입장에 대해 답을 들었다. 이야기하다 보니 조사실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폭언들이 오가기도 했다. 마치 조정위원이라는 이가 가해자와 나를 나란히 놓고 싸움을 부추기듯 A는 이렇다고 주장하는데 B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식으로 끌어갔다.

상대방의 폭력만큼 거짓말도 혼인파탄 사유임을 답하니 ‘사랑했으니 그랬겠죠?’ 라는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인 대답을 들어야 했다. 피해자를 조롱하는 태세로 조사는 긴 시간 동안 몇 차례 더 이뤄졌다.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둘이 다시 살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답하다 보니 더욱 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법원의 보호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돌아가다 가해자를 만나면 어쩌나, 돌아가다 이 앞에서 무슨 일이 있음 어쩌나’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고도 한참 뒤에 나오거나 꼭 누군가와 동행을 하여 법원에 출석하였다.

화해권고 조사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닌 증폭시키는 불필요한 절차였다. 더구나 가정폭력으로 소를 제기한 피해자는 하루빨리 폭력이란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이를 빼앗길까 봐 원치 않은 화해조정을 참아야했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다.

조사 때마다 책상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며 손을 올렸다 내렸다 욕설을 내뱉는 가해자와 그것을 제재하는 위원의 모습을 장시간 지켜보며 겁에 질려야 했다. 조사관은 심지어 이혼과 관련이 없는 시부모의 공무원연금 관련된 내용까지 물으며 내가 겪는 공포심은 나 몰라라 했다.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그가 소리를 지르는데 나에게 “대답하지 마세요.,” “왜 자극해요?”라고 물으며 면박을 주었다.

민사도 형사도 가정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가해자에게 “왜 자꾸 소리를 지르냐? 왜 험한 단어를 쓰느냐” 꾸짖기보다 피해자에게 “왜 자극하는 말을 하느냐? 좋아하는데 뭐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며 그의 부정적인 행위를 합리화 시켰다. 나는 그 순간순간이 상처였다

## 3. 상대방과 1박 2일로 여행을 권유

법원에 다녀와서 어느 날 집으로 전화 한통화가 왔다. 가정법원 조정위원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지난번 상담은 잘 받았냐?” 물으며, “아이가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해야 한다, 상대방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세요.”라고 권했다. 순간 나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권할 수 없는 내용이라 순간 화가 나 “싫어요. 저는 그 사람 보는 거

소름끼쳐요.” 했더니, “아이 양육권 지정될 때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동네 부근에서 보던지요?”라고 하며 만남을 강요했다. “내가 왜 이혼하는지 사유는 확인하셨어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고 심지어는 혼인 중에 흥기를 들어서 더는 살 수 없는 상태인데 제가 칼 맞으면 가정법원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왜 이혼하는지 모르세요?”라고 물었다. 통화를 하던 담당자는 물음에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재빠르게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 이후 연락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1박 2일은 왜 권하였는지 의문이고 조정을 하며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어 왔으면서 무엇을 바라고자 그런 제안을 했는지 알 수 없다.

#### 4. 면접교섭을 아동의 권리 측면으로 보지 않고 비양육자의 권리 측면으로 바라봐 사전처분으로 이행하도록 명령.

이혼 소송 당시 사회면 일면에 이혼소송 중 전남편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을 보았다. 지독하다 못해 잔인했던 가해자의 폭력이 떠오르며 면접교섭 사전처분에 대해 나는 강하게 반박했다

아이가 당시 어렸고 상대방의 직장환경에서 어린아이가 장시간 놓여 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 사람은 아이 양육비도 안줘요. 그런데 면접교섭을 사전 처분한 다투요?”이어 또 발생될지 모를 폭력이 두려워 “나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깊은 골을 겪는 시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은 폭력이다.”라고 반대하는 주장을 하였다.

나의 변호사도, 상대방 변호사도, 판사도 모두가 면접교섭은 비 양육자의 권한이고 아이가 아빠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것은 아니기에 이행되어야 한다며 면접교섭을 거부할 시 양육권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설득했다. 이혼 소송 중 양육비는 미지급이지만 아이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도록 명령을 내렸다. 사전처분으로 명령이 떨어진 면접교섭은 상대방의 주장을 다 수용하여 월 2.4,5주로 결정이 났다. 그러나 1년 동안 그가 아이를 보러온 면접교섭은 5회 정도였다. 그 5회 동안 아이를 장시간 데리고 가서 돌아다니기 귀찮아 박스에 넣어 두는가 하면 면접교섭 일에 아이를 가게에 방치하고 본인은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가거나 장시간 아이에게 식사를 먹이지 않는 등의 방임, 방치 학대를 했다. 아이에 대한 보호 또는 관리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는 면접교섭이 이뤄졌고 아이에게는 그 어릴 적 기억 현재에도 있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를 귀찮아했어. 나한테 저리 가라고 했고 배고프다고 하면 집에 가서 밥 먹으라 했어. 아빠에게 여자가 있기에 그 여자 때문에 아빠가 돌아올 수 없는 거야.’ 이혼과정 중 내 아이에게 극심한 혼란을 줬던 면접교섭은 몇 회 이행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많이 불안해 녹음기를 켜고 영상을 촬영했던 기록이 아직도 있다.

## 5. 법원 안에서 폭력과 폭언

소송이 끝마무리에 접어들 때쯤 시간은 4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보통 이혼 소송은 2년이라는 데 나는 남들의 이혼보다 길었다. 상대방은 폐문부재로 송달을 거부 또는 기일 변경으로 시간 늦추기를 하였고 오랜 시간 서로가 지쳐가는 상황이었다. 심문기일에 참석했을 때였다. 재판장에 나와 복도에서 그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내가 서 있는 쪽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나와 나의 변호사, 엄마가 같이 탔다. 이어 그도 함께 따라 탔다. 좁은 공간 안에서 가해자와 함께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날 서로가 흥분한 상황이라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상황이었다. 나의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내려서 다음에 탈 것을 권했지만 가해자는 좀처럼 내리지 않고 “내 맘대로 내가 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나?” 말했다. 변호사는 나와 엄마에게 내리기를 권했고 나와 엄마는 내렸다. 그에 가해자가 따라 내렸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그러자 변호사가 “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상대방은 점점 흥분해서 침을 뱉어가며 험한 말들을 내뱉고 엄마의 가방을 발로 차버렸다. 순간 너무도 놀랐다.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피해자인 나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폭력을 당했다. 법원 경호원들이 여러 명 나와 말렸지만 나는 이미 폭력을 고스란히 당한 후였다. 나는 황급히 보호를 받으며 빠져나가 병원으로 갔다. 결국 손목에 깁스를 했다. 변호사는 그날의 상황을 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 6. 이혼 후 양육비해결을 위한 소송 그리고 피해자가 감당해야하는 반복된 폭력과 폭언

이혼판결문을 받고 이 모든 악몽이 끝나는 것만 같았다. 판결문대로 이행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았다. 양육비와 위자료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고 아이를 혼자 키우기 위하여 양육비 소송을 시작해야 했다. 오랫동안 양육비 소송을 국가기관이 이행관리원을 통하여 진행해왔지만 단 한 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다 현행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금까지의 10년도 못 받았는데 앞으로 10년도 못 받는 다구요?” 정말 좌절감이 팽배했던 시기였다. 결국 피해자인 나는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2019년 양육비지급촉구를 바라는 피켓을 들고 찾아갔다. 찾아간 자리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사람들의 험한 말과 비난을 그대로 피해자인 내가 경험해야 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나에게 그의 가족들은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집 나간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오냐?”며 험한 말들을 내뱉었다. 판결문은 그냥 비싼 이면지와 같았다. 판결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혼의 내용은 그 판결문을 받은 나만 아는 비밀 같은 존재였다. 상대방은 법을 비웃듯 “이깃 판결문 필요 없어!”라고 소리쳤고 나는 이후에도 양육비를 해결하기 위한 1인 시위와 집회를 감행해야 했다. 그러다 2020년 양육비지급촉구를 하기 위해 찾아간 1인시위에서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당해 찾아간 병원 앞에서 그를 만나 2차 피해를 경험하였다. 당시 병원 옆 고깃집 CCTV에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겼지만 고깃집 사장은 가해자 가족들과의 친분이 있기에 협조를 거부하였다.

이런 상황에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며 주장을 했다. 피해자인 나는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한 날짜에 두 차례나 폭행을 당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해자로 조사를 오랫동안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다. 그의 거짓말에 설득력 있는 진실로

반박을 해야 하는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배로 고통을 주었다

이혼 소송 긴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혼소송이라는 감정적 고도에서 상대방과 시시비비를 따지고 소명해야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잘못을 뉘우칠 경험도 없었고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다음과 같이 제도와 인식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법원 관련 종사자 인식 개선 및 가정폭력 인식 교육 실시**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 또는 개인의 일이라 단정 짓고 판단해 조사과정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가정폭력은 대물림되며 피해자와 아이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그러므로 단순한 개인 간의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을 모두가 인지하고 관련 종사자(경찰/법원/양육비이행관리원/ 조정위원회)들은 정기적인 교육을 이뤄져야 한다.

**\* 피해자 안전 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혼의 사유 중 가정폭력은 성격차이나 외도 도박과 달리 단순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범죄로 바라보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또는 안위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 가정폭력 이혼 소송 시 조정 절차 삭제 및 소송 절차 간소화**

가정폭력은 상담을 통해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정이라는 절차를 삭제하고 판결을 변호사의 변호 또는 서면으로 빠른 기간 내에 판결하도록 간소화가 되어야 한다.

**\* 불가피한 조정 시 가정폭력 이해도 높은 전문인 참관**

조정이라는 절차가 필요로 한다면 1명이 아닌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명과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필요한 질문만 하도록 갈등의 골이 깊은 것을 막아야 한다.

**\* 형식적 교육 아닌 실질적 부모교육 필요**

면접교섭 때문에 부모교육을 가정법원에서 실시한다. 그런데 교육영상의 수준이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을 때우는 형식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아이의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이며 부모로서의 태도, 목표, 규칙 등을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1시간 분량의 영상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면접교섭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인 동석**

가정폭력으로 혼인파탄의 경우 면접교섭은 상담가나 관리자가 동석할 수 있는 법원 내에서 일정시간 관리보호를 받으며 이뤄져야 한다. 나의 경우에는 법원의 무책임한 명령으로 아이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었다.

**\* 법원 출석 시 가정폭력 피해자 법원동행 서비스 실시**

소송 중 피해자들은 법원을 혼자 출석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래서 지인이나 가족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어려움이 크다. 피해자의 경우 법원에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법원 내에서의 불미스러운 일까지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 가정폭력 가해자의 친권 박탈**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10여 년간 지급하지 않다가 양육자가 사망을 하여 양육권을 가해자에게 빼앗긴 우리 회원(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 사례가 있다. 아이 엄마는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홀로 두 아이의 양육비를 책임졌고 사망한 후에도 외할머니가 엄마 대신 아이들의 양육자로서 돌봄과 생계를 도와 양육을 이어나가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아이들이 아빠에게 가는 것이 아닌 미지급액이 해결이 되어 사망 후에 외할머니가 두 아이의 양육을 맡아줬으면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해 외할머니께서 많이 괴로워하신다고 전해 들었다. 평생 아이들을 외면하던 아빠가 양육권을 빼앗아가면서 양육비 미지급액은 소멸이 되고 현재 두 아이 역시 가정폭력 가해자와 살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 치료가 없다면 반복되고 대물림 된다. 이 경우처럼 조부모가 양육을 원할 시 조부모에게 양육권을 주고 미지급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친권을 박탈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 아이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피해보상 지급**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 양육비미지급 피해사례들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 후 상대방이 두려워 양육비를 요구조차 못하고 단절된 사례들이 매우 많다. 양육비 판결이 보통 월 40~5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생활에 크게 좌지우지할만한 금액이 아니라 생각하고 처음부터 포기한다. 그러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돌봄에 공백이 생기고 정규직 채용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해결하고자 갈망하는 양육자들이 점차 많아진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폭력 트라우마 치료를 제대로 못 받다 보니 해결 과정을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양육비 해결은 쉽지 않다. 이에 한시적으로 양육비의 대상에 가정폭력피해자를 넣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

또 근본적인 양육비 해결은 6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 7월부터 시행되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같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절차들이 잘 실행되면서 구상권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제재절차가 처벌의 목적보다 같은 부모로서 비양육자에게도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직접적인 당사자 간의 갈등도 좀 완화될 수 있고 극단적인 폭력 상황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한다. 양육비 지급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가 조력의 향방 :  
가정폭력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국가 조력의 향방 : 가정폭력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허민숙<sup>25)</sup>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가장 흔하게 듣는 조언은 바로 ‘이혼하라’는 것이다. 이혼이라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결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폭력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거나, 실제 있지도 않은 피해를 과장하는 것이라 의심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녀,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독립, 가족의 반대, 주변의 만류, 사회의 부정적 시선 등으로 이혼을 망설일 수 있다. 정말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의 집착과 위협의 고조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 여성들의 34.2%는 이혼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하였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의사는 분명하였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2.5%만이 결혼생활 지속의사가 있었으며, 97.5%(이혼(82.5%), 별거(15.0%))는 배우자와 결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별거나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있어서는 ‘폭력행동의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 ‘자녀들에게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서’, ‘혼자 헤쳐나갈 자신감이 생겨서’,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라 답변하였다.

이번 연구의 <이혼에 대한 인식>에서도 배우자의 폭력은 분명한 이혼사유가 된다는 의견에는 이견의 여지가 매우 적었다. 경제적 자립과 자녀양육 문제가 이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답변은 경제적으로 자립가능하고, 전과 다름없는 환경과 여건에서 자녀를 키울 수만 있다면 이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얘기해왔던 ‘주변의 시선과 편견’ ‘가족의 반대’는 이혼을 결심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국민 수용률은 87.4% 였고, 본인 또는 자녀가 한부모 가족, 또는 재혼가족의 자녀와 혼인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매우 적었다.

---

25)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표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문항	수용할 수 있음
•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	87.4%
• 본인 또는 자녀가 혼인하려는 상대방 가족의 형태가 '한부모가족'인 것에 대해 찬성함	78.3%
•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하려는 상대방 가족의 형태가 '재혼 가족의 자녀'인 것에 대해 찬성함	74.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2019.

이러한 의미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중 하나는 이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폭력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법률지원' 68.0%, '심리, 정서적 상담 지원' 62.7%, '주거지원' 57.3%, '경제적 지원(생계비 지원, 자립정착을 위한 저리대출 등)' 54.7%, '취업관련 훈련,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 53.3%, '배우자의 접근 차단' 48.0%, '자녀에 대한 지원(교육 지원, 심리상담 등)' 42.7%, '자녀양육지원(돌봄지원)' 28.0%, '지속적인 치료지원이나 건강관련 프로그램' 20.0% 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었다.

매맞는 여성들은 왜 떠나지 않는가? 라는 안타까움과 비난이 혼재된 질문이 밝혀야 할 구조적 억압 중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과정은 큰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오늘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과정에서 어떠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지를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2008~2021년 현재까지 미국에서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가 살해한 아동은 793명이다. 가해자는 아버지가 73%로 가장 많고, 어머니 15%, 양어머니 3%, 기타 8% 이다. 이혼과 관련한 아동살해 데이터의 수집은 법적인 제도장치를 갖추는데 기여하였다. 미국 주정부 법령은 '반증허용추정(Rebuttable Presumption)'에 따라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공동 신체적 양육권 및 법적 양육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반증허용추정이란 그 반대의 증거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사실로 간주하는 추정사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주는 법원이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가해자에게 아동의 공동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애리조나주는 가정폭력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가해부모에게 공동양육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양육권 및 자녀면접교섭 결정을 위한 '아동의 복리(Best Interest of Child)' 원칙을 판명하는데 있어 가정폭력을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칸소주는 아동이 학대로 인한 상처가 없고, 가정폭력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아동과 관련한 결정 시 가정폭력의 영향에 대해 반드시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델라웨어주는 자녀가 가정폭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양육권과 거

소결정에 가정폭력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영국 여성지원단체(Women’s Aid)가 발간한 법원의 신중하지 못한 자녀면접권 결정으로 인해 29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보고서 출간 이후, 가사재판심의회(Family Justice Council)는 자녀면접권을 결정하는데 있어 아동의 안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사재판심의회 의장 Jane Craig는 자녀면접 교섭 결정에 있어서의 문화적 변화를 촉구하며, ‘면접이 항상 옳다’라는 관점에서 ‘안전, 그리고 아동에게 이로운 면접이 옳다’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표 78] 영국 가사절차규칙 시행지침(PD12J)

구분	주요 내용
제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반드시 가정학대가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li> <li>- 자녀면접권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법원의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은 경찰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사안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li> </ul>
제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학대 사안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법원은 반드시 진상조사청문회(fact-finding hearing)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면접교섭이 아동 복리에 부합한다는 확신 없이 임시 자녀면접교섭을 허용하여서는 안됨</li> </ul>
제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은 반드시 해당 아동, 각 부모에 대해 전문가 심의(안전 및 위험도 측정 등) 명령을 고려해야 하며, 자녀면접교섭 명령 이전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등의 전제조건을 부과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함</li> </ul>
제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면접교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자녀면접교섭으로 인해 아동이 폭력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 해당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다른 부모가 가정학대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li> </ul>

2017년 12월 25일 4살 Aubrey와 6살 Chloe 자매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이혼한 아버지 Andrew Berry에 의해 살해된다. 캐나다에서의 일이다. 자매의 어머니인 Sarah Cotton은 2016년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parenting time) 관련 갈등을 겪었고, 전 남편 Andrew Berry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점을 법원에서 진술하며 자매가 하룻밤 이상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전 남편의 공격적인 성향과 부적절한 행동이 자녀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Chole와 Aubrey의 사망사건 이후, 이혼과정에서의 자녀면접교섭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이혼재판에서 면접교섭 관련 분쟁 시, 판사들이 가정폭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점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2019년 6월 21일 개정되어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캐나다의 「이혼법(Divorce Act)」은 양육권 관련 사항을 결정할 시, 법원은 반드시 가정폭력(family violence)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표 79] 캐나다 「이혼법」의 가정폭력 관련 조항

조항	내용
Divorce Act Sec. 16(4)(a)	•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본성, 심각성, 빈도
Sec. 16(4)(b)	• 가족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강압과 통제의 패턴이 있는지의 여부
Sec. 16(4)(c)	• 가정폭력이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향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아동이 가정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는지의 여부
Sec. 16(4)(d)	•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상해 또는 그러한 상해의 위험
Sec. 16(4)(e)	• 아동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어떠한 절충 내지는 타협이 있는지의 여부
Sec. 16(4)(f)	• 가정폭력이 아동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자기자신,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의 여부
Sec. 16(4)(g)	• 가정폭력과 연루된 자가 가정폭력의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Sec. 16(4)(h)	• 그 외 관련 요인

법률의 개정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 부모와 자녀 모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 부모의 직접적인 폭력과 학대로부터 어린 자녀를 보호함은 물론, 자녀면접교섭 등 양육권이 매개가 되어 결별 이후에도 피해 부모가 가해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표문의 정책 제안은 모두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1)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비송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심리에 반영하도록 함(정일영의원 대표발의), 2) 재판상 이혼의 소의 당사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때에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가정폭력행위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가정폭력범죄의 성질,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함(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현재 의원발의안의 수준에서라면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것이 고려될 수 있지만, 양육권 및 면접교섭사전처분, 부부상담 등을 전면배제하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발표문에서처럼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기간을 단축시키고, 가사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부부상담명령 및 자녀면접사전처분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가정폭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방어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폭력(쌍방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가정폭력에서 상대의 친권을 전면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겨져 있다. 이는 사안을 다루는 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제도가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방교육 및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

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에 관한 의무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2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가정폭력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 향후 과제로 가정폭력 전담재판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불특정 다수의 재판부 및 관련자들이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전환을 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가정폭력에 대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경찰, 검사, 판사 등이 사건의 수사, 증거수집,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가정폭력전담 재판부를 도입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가사조정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

여혜숙 |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권침해방지 : 가사조정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여혜숙<sup>26)</sup>

토론자는 2014년부터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경험하고 느낀 것에 기반 하므로 전체 법원의 정책과 방향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1. 이혼조정 의 변화

2014년에 가사조정위원으로 갈등해결분야 실천가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2013년 인천지방법원 부친지원에서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 실시<sup>27)</sup>한 임수희 판사의 소개로 회복적 조정의 조정자로 참여했던 단체 추천(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한국비폭력대화센터, 한국교육평화훈련원, 비폭력평화물결 등)으로 이루어졌다. 2014년 처음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연수에 참여했을 때 법원장의 당부말씀이 인상적이었다. ‘조정에서 이혼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이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이었다. 조정위원의 개별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가사조정 의 방향성은 변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2. 이혼조정과정의 이해

조정 의 과정은 이혼소송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고 법의 기준에 따라 제3자(판사)의 판결하는 과정에 ‘당사자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과정’이 마련되는 것이다.

조정(mediation)은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 제3자가 대화를 돕는 프로세스이다. 조정자는 당사자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성을 견지해야 하고, 문제해결을 도울 뿐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조정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며, 문제해결 방법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또한 조정과정에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혹시 법절차로 가게 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나 답변서 외에 주고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는다. 조정자와 당사자가 모두 비공개와 비밀보장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조정은 당사자들의 드러난 입장 이면에 관심사와 욕구, 필요를 파악하여 가능한 합의의 길잡이를 하기 위함이다. 조정위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갈등해결 실천가로 정체성을 가진 조정위원들은 당

26)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27) 미국 뉴욕주에 통합가정폭력법원(Integrated Domestic Violence Court, IDVC)이 있는데 2018년 1월 현재 뉴욕주 전체에 39개가 있음. ‘하나의 가정은 한 명의 판사에게 one Family-one Judge’라는 이념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에 관련된 형사 문제와 이혼 등 가사 문제를 민사·형사·가사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문제해결법원(Problem Solving Court)으로 뽑힘. 문제해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을 실시. <처벌뒤에 남는 것들> 임수희

사자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리 배치, 이야기 순서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조정전치주의라 하여도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현재 조정은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 등에 있어 부부가 정말 완벽히 합의를 본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속히 확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빨리 종결짓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대가 판결에 이의 제기를 하면 3심까지도 갈 수 있어서 소송과정만이 빠른 방법은 아닌 것이다. 또한 조정과정에서 오히려 '이혼에 대한 강력한 의사 표현을 상대 앞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도 조정과정의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로는 조정과정에서 상대를 대면하는 문제와 준비하는 과정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대리인이 참석할 수도 있고, 개별 면담을 통해서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 조정은 당사자의 '참여의지'가 있어야 하며,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여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정위원의 관점에서 보면 조정이 불성립된다 하여도 조정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러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젠더와 인권감수성이 있는 조정위원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조정위원을 배치하여 안정적으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조정위원들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과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당사자일 경우 이 분야의 전문 조정위원을 배치하는 것도 우선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3. 가사조사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조정 전이나 조정과정에서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가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인천법원의 경우 조기개입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법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가사조사의 취지는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류에 나타난 각자의 주장과 이유를 본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으면서 재판과 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친권, 양육권 관련, 면접교섭 관련하여 당사자 의견차이가 많을 때 양육환경조사를 실행하기도 한다. 보통은 전화로 하지만 직접 면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개별 면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혼 결심 계기 및 협의과정, 자녀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조사관의 의견과 함께 갈등의 정도, 가정폭력 정도, 신변보호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가사조사도 의무사항이 아니며 거부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가사조사를 통해 이혼의사를 밝히고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 설명할 기회로 생각한다면 또한 부부상담도 권유를 할 수 있지만 명령을 내릴 순 없다.

하지만 이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어서 조정위원과 조사관이 역할을 수행할 때 개별차이가 있고, 가정피해 당사자로서는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가사조사가 이루어질 때 가정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안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4. 드러난 가정폭력 피해자 외에도 이혼조정과정에서 폭력행동은 많이 발견되나 그것이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폭력이 내재화되어 있는 현상이 있다.**

구타·폭행과 같은 상해를 입히는 물리적 폭력 외에 막말·무시·강요 등이 폭력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폭력을 인정한다 해도 상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폭력감수성을 높이는 것, 인권인식이 개선되는 것, 갈등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활용에 대한 안내도 시급히 필요하다.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원이 더욱 늘어나야 할 것 같다.

# 이혼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과 방향

---

김재희 | 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혼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과 방향

김재희<sup>28)</sup>

## 1. 들어가며

필자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가정폭력이 병합된 이혼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와 가사소송 양 갈래로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가정폭력의 개념이 확장되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형사사법절차의 속도를 가사사법절차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큰 아쉬움을 느낀다.

본 발제에서는 발제자가 실제 이혼소송과정에서 체감하였던 가정폭력 사건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 2.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상 가정폭력과 민법 840조 3. 의 심히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실행하고 하며,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배우자의 통제 등도 가정폭력으로 분류하여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유럽성평등 연구소(EIGE)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네 가지 핵심유형을 신체적 폭력, 성폭력, 심리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리적 폭력에 대하여 “개인에게 심리적인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로서 심리적 폭력은 강압, 명예훼손, 언어적인 모욕 또는 괴롭힘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sup>29)</sup>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형사절차에 있어 가정폭력 사건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져 부수거나, 폭언을 하거나 정서적인 학대까지도 폭넓게 가정폭력으로 인정하고 있

28) 김재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출처: EIGE, Forms of violence, available at [https://eige.europa.eu/gender-based-violence/f](https://eige.europa.eu/gender-based-violence/forms-of-violence)

29) [forms-of-violence](https://eige.europa.eu/gender-based-violence/forms-of-violence) [Accessed August 29, 2020]

고, 정서적인 위협이나 학대 등에 대하여도 과거에 비해 수사기관이 깊게 들여다보고 법원에서 가정폭력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은 다음과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므 1890 판결),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경우 그 개개인의 사실은 간접 사실로 청구인이 일일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8.28. 선고 90므 42판결).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인정되는 가정폭력 행위는 민법 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민사상 인정되는 불법행위가 형사상 인정되는 범죄행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고 할 때, 민법 제840조 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정폭력보다 더 넓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가정폭력(특히 의처증 기화로 한 협박, 의심, 통제 등)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3호 소정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관련 증거를 모두 인정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더라도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매우 좁게 해석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이혼소송이 기각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가사소송에서 가정폭력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고 소극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피해자로서는 애초 형사고소 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형사절차에서 가정폭력이 인정되어 상해, 폭행, 협박 등으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릴 경우 자의 복리가 우선되어 가정폭력 사건은 사소한 쟁점으로 치부되거나 가정폭력과 혼인파탄에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재판, 조정, 가사상담 절차에서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이혼을 지속적으로 회유당하거나 가정파탄에 대한 죄책감을 전가 받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 3. 가정폭력 형사절차와 가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제도의 불균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임시조치(제29조),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직장 등에 접근을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21. 1. 2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499호]은 가정폭력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특히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점을 법률에 명시한 점,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한 점(개정 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녀 면접교섭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 한 점 등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절히 관련법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형사절차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가사소송절차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턱없이 미흡하다.

특히 가사상담이나 가사조사 절차에서는 법률대리인이 피해자와 함께 입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홀로 행위자들을 대면해야 하는 가사상담 및 가사조사 전후로 극도의 불안감을 겪는다. 또한 가사조정 등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 상대방을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피해자 보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신변위협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4.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가사조사

법원조직법 54조의3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그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을 두고, 가사소송법 제6조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사조사관은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그밖에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사업무를 행하고, 조사업무에는 사실조사, 의무이행상태점검과 권고,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그 밖의 주위환경 조정을 위한 조치, 가사사건의 기일에의 출석과 의견진술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가사조사관이 작성하는 가사보고서는 판결·심판·조정 기초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아가 조사보고서는 서증이나 사실조회 결과와는 다

르고 오히려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에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이어서 증거목록에 기재하거나 변론에 현출하지 않더라도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 (가사소송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2021)

최근 가정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유지의 의사가 있거나, 양육권에 다툼이 있을 경우 상당부분 가사조사를 거쳐 가사조사보고서에 의존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한쪽 당사자는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반면 상대방 측 당사자는 강한 혼인유지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변론 절차에서 사건의 쟁점이 전혀 현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상담 및 가사조사 절차에서만 현출된 사안들을 근거로 가사조사보고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의 진술이 실제적 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거나, 진술능력이 부족할 경우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변론절차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우려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학습화된 무기력에 빠지거나 행위자와 과거 형성된 권력관계로 인해 가사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론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절차에 있어 상대방의 반론권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사조사 내용 중 변론절차에서 현출되지 않았으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의 경우에는 재판절차를 통해 관련 사안을 현출시키거나 가사조사 내용의 일부라도 당사자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5. 제언 및 결어

가정폭력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면 경찰은 당해 사건의 가정폭력을 보다 잘 이해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착안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평가 문항을 분석해 보면, 단순히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폭행 심각도 뿐만 아니라, ‘가해자 통제 어려움’ ‘현재 피해자의 심리적 혼란 상태’ ‘가정폭력 전력’ ‘가해자의 성격 심리적 특성’ 등 가정폭력의 요인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고위험군 가해자 분류 작업을 하여 피해자보호조치, 가정폭력 사건 심리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가사소송 절차에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이 접수되었을 때, 법원은 사건 초기단계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보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평가 조사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재범위험도가 높은 사안일 경우 가사조정 및 가사 상담 과정에서 당사자를 분리하여 심리하거나 피해자보호절차를 마련하여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이혼 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허순임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대표

# 가정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이혼 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허순임<sup>30)</sup>

## I. 문제점

- 판사: 가정폭력피해자 이혼소송 재판 진행 중

“부부상담 10회 진행 권고합니다. 부부상담 참여 하지 않겠다고요? 부부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적용하게 되어서 이혼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혼소송이 아주 오래 걸린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 조정위원: 가해자와 조정 재판에서

“저렇게 반성하고, 다시 때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적당히 한 번쯤 기회를 더 주지, 여자가 적당히 봐주는 맛이 있어야지...그렇게 딱딱하게 구니 때릴 수밖에...” (남)

“그렇게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으면, 지금은 증거가 약하니, 한 번 더 집에 들어가서 맞아 갖고 나오세요. 그러면 증거가 명확해지고, 이혼이 쉽겠네요”(여)

- 가사조사관: 가해자와 부부 조사 진행 과정 중

“왜, 원치 않는 성관계라고 하면서 그만하겠다. 성관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가해자와 같이 가사조사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가정폭력 후 가해자가 화해한다고 일방적으로 성관계 할 때 공포스러웠다 말하는 피해자에게 한 말)

- 변호사: 부부상담 10회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판사가 하라는 것을 했을 때 가장 빨리 끝날 수 있다. 왜 부부상담을 진행하지 않겠다고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쉽터 선생님들 없이 들어서만 이야기하면 안되겠냐”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원: 협의이혼 부부상담 진행 중

“쉽터에 있다는 것을 아버님께 알려 드려야겠네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려야 당신(피해자)에게 도움이 될거예요. 정확히는 설명 드리기 어렵지만,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 ○ 이혼, 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판이혼 진행 과정 중 피해자가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

30)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대표

다. 가사조사, 사전 면접조사, 부모교육, 조정재판, 부부상담, 이혼재판 등의 진행 과정, 상황, 운영하는 사람들, ‘가정폭력’이라는 특수성의 불이해, 가부장적 관점, 가정의 복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 선택권 없이 강요받는 자녀, 안전 보호 대책의 미비, 인권 침해 상황에도 호소, 구제 받을 수 없는 구조 등 가정폭력 없는 가정과 차이 없이 적용되는 이혼과정 자체가 인권침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 대면, 가해자 대면 자체가 폭력의 재경험이다.

이번 연구 조사 중 부부 상담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 또는 비난을 듣는 것, 54.2%’, ‘상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자체, 33.3%’ 으로 응답했다. 이는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 자체가 폭력의 재경험이며, 이는 직접적인 상해를 당하는 신체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와의 대면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수시로 요구된다. 이를 시행할 때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옆에 있을 것이다.’ 등등의 말로 만나는 순간 환경이 안전하다,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평균 기간이 약 10년 정도이며, 그 기간 동안 가해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까지 경험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대면하는 순간, 얼굴·표정·태도·목소리·일방적인 주장·회유하는 말과 행동 등이 모두 가정 내 이루어졌던 폭력의 재현이며, 정서적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폭력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가해자와 대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배우자와 상담관 조사를 받으려고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그 사람이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소름이 짝 끼치면서 나는 꿈쩍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있을 때, 저를 무참히 폭력을 하고 강제로 성폭력을 한 다음 눈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해자와의 직접적 대면은 신체적 가해, 욕설, 고성, 협박 등을 통한 직접적 폭력에 무방비하다. 본 연구에서 말했듯이 흥기를 휘두른 사건 이외에도, 갑작스럽게 꺼안는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 등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지 말라고 제재 하는 정도이며, 흥기를 싣고 차량 미행, 사람을 고용한 후 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쉼터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노출 된다면 다시 쉼터를 옮겨야 한다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 ○ 법원, 피해자 안전에 대한 대책 전무하다.

가사조사, 자녀 사전 면접조사, 조정재판, 이혼 재판 등 법원에서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하다.

현재 존재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동행 요청 하는 것이 전부이며, 이 또한 인력부

족, 시간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거부되기도 한다. 동행 하였을 때도 법원 재판실 앞, 조사관실 앞까지 동행만 동행하고, 그 이후 조사 받거나, 재판 진행하는 시간에는 철수하며,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끝나게 되면 다시 연락을 하라고 하지만,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며, 끝나고 나서 연락한 후 도착할 때까지 가해자와 법원 건물에 있어야 한다는 자체가 다시 위험에 방치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혼소송 재판 시 쉼터에서 출발할 때부터 재판 끝나고 쉼터 귀가 시까지 법원에서 파견된 법원 경찰이 지원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된다.

### ○ 사전 면접교섭, 아버지의 권리만 존중, 자녀들의 선택권은 없다.

가정폭력피해 가정의 자녀는 이중의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다.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인 엄마가 맞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중의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불안한 환경, 공포스러운 가해자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심리적 내재화 또는 외현화된 상태에서 쉼터에 입소하게 된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급작스럽게 쉼터로 오게 된 자녀는 새로운 생활환경, 교육 환경에 적응해야 할뿐만 아니라 쉼터에 가해자가 찾아올 것에 대한 불안감, 어머니가 죽거나 자신이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전면접교섭처분이 내려지거나, 사전면접교섭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법원에서 가해자와의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심리적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심지어는 7세 자녀를 목조르고, 살해 협박까지 해 아동학대 가해자로 판별 되었음에도 사전면접교섭이 요구되기도 하는 현실인 것이다.

### ○ 인권침해 상황에서도 의의제기가 어렵고, 호소할 구조 또한 전무하다.

## II. 개선 방향

### ○ 가정폭력 특수성이 반영된 이혼소송 구조가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소송은 일반시민의 이혼소송과는 다른 절차 및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사조사, 자녀 면접교섭을 위한 자녀면접조사, 사전면접교섭처분을 제외해야 한다. 이 구조가 적용된다면 이혼소송 진행 기간은 당연히 단축되리라 본다.

### ○ 여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지침 마련 필요하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이혼소송 전담 인력에 대한 년 1~2회 또는 년 10시간 이내 여성폭력 예방 교육의 의무화,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유형에 대한 교육,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가정폭력관련 이혼소송 전담 부서인 경우 1년에 일정시간 교육 의무화 실시하고 있다.

### ○ 법원 내 가정폭력피해자 안전대책 마련,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이혼소송이 진행될 시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시설에서의 요청이 있을 시 안전하게 보호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법원 내에 만들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 전담인력배치를 통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인권침해 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가사조사, 부부상담, 면접교섭을 위한 자녀 조사, 사전면접교섭 처분 권고 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때 피해자는 불이익이 될 것을 염려하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받아들여지기도 어렵지만, 개별 의견 수렴으로 그 순간 요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다른 사례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거나, 변화까지 가기는 어렵다. 이에 인권침해 시 문제를 접수 할 수 있는 공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 **자녀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인 경우, 면접교섭 진행 시 연령, 피해 노출 정도, 가해자의 폭력 정도, 가해자의 재발 가능성 정도, 아동학대 여부, 자녀의 의사 확인 등을 통해 면접교섭 미적용, 유예 등이 필요하다.

○ **사전면접교섭은 절대 불가하다.**

쉽터서 보호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 자녀에 대한 사전 면접교섭처분은 절대 불가하다. 면접과정 중 쉽터가 노출 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이다.

---

##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토론회

- 발행일 | 2021년 6월 11일(2021-04)
  -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 

###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사회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고 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현재 전국 25개 지부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조직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